

귀속재산처리법 존치 필요성 및 개선방안 연구

양태건 · 장은혜



귀속재산처리법 존치 필요성 및 개선방안 연구

A Legal Study on the Act on Disposal of Vested
Property

연구책임자 : 양태건(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Yang, Tae-Gun
장은혜(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Jang, Eun-Hye

2019. 10. 4.

연 구 진

연구책임 양태건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심의위원 김남철 연세대학교 교수
박훈민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권채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협의(자문)위원 정태용 아주대학교 명예교수
김원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연구관

연구보조원 김학진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요약문

I. 배경 및 목적

- 2017년 행정자치부는 행정의 간소화 및 합리적 정부체계 구축을 위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등 위원회 조직 정비를 위한 조사과정에서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에 따른 「귀속재산소청심의회」가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는 여부를 문제삼고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 그 검토를 요청하였음
- 기획재정부는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법의 폐지 여부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이견대립이 있어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함
- 이에 해방 이후 「귀속재산」이라는 막대한 양의 재산에 대한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것이므로 귀속재산처리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귀속재산처리법」 규정을 분석함으로써 동법의 존치 필요성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할 필요가 있었음

II. 주요 내용

▶ 「귀속재산처리법」 내용의 한시적 성격

- 「귀속재산처리법」은 그 내용을 살펴 볼 때 귀속재산의 민간불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한시적 성격을 가진 법률로서 이미 역사적 소명을 다 하였음

- 당시 사경제의 기반이 미약한 상황에서 귀속재산의 민간불하를 통한 경제활성화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이에 부응하고자 했던 것이었고 대부분의 조항이 현재 상황에서는 그 의의를 상실하였음
- 다만 법 제2조의 귀속재산의 개념 정의 조항만은 여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귀속재산 법률관계의 미완결된 법적 부분의 존재

- 귀속재산 처리는 미군정 시기 - 이승만 정부시기 - 박정희 정부 시기를 거치면서 민간불하 부분 및 국유화 조치 부분에 대한 법률관계가 종결되었음
- 다만 본래 귀속재산에 속하지만 관리나 공적 장부의 불비나 확인 불충분 등으로 인하여 은닉된 재산과 불법·탈법적으로 빠져나간 재산 부분이 존재하고 이 부분에 대한 법률관계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음. 이 부분은 본질적으로 '국유재산'에 해당하여 환수해야 할 부분에 해당함

▶ 「귀속재산처리법」의 존치 필요성 및 개선방안

- 「귀속재산처리법」은 폐지되어도 큰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귀속재산에 대한 법률관계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전히 제2조의 귀속재산의 정의 조항이 큰 의미를 가지므로 당분간 존치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함
- 더불어 귀속재산에 대한 법률관계의 신속한 종결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성이 존재한다면 전담기구나 인력 확충 등에 관한 규정, 과거 호적정보와 같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권한 규정 등을 보완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고려해 봄으로써 개선이 가능할 것임

III. 기대효과

- 이 연구를 통하여 「귀속재산처리법」의 존치 여부나 법개정에 관한 정책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귀속재산에 관한 법률 관계의 정의로운 처리를 위한 문제의 범위 파악 및 중장기적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

▶ 주제어 : 귀속재산처리, 한시법, 국유재산, 자주점유, 환수

Abstract

I. Backgrounds and Purposes

- In 2017,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requested a review on further need to maintain ‘council for petitions on vested property disposition’ of Article 39 of *the Act on Disposal of Vested Property* from the perspective of efficient simplification of administration system
- At that issue, opinions divided within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whether there will be no problems despite *the Act* abolished
- Thus, it is strongly needed to study comprehensively covering on from the historical process of disposal of vested property to the contents of *the Act on Disposal of Vested Property* for giving light on the issue of whether to maintain the Act or not and how to amend it if possible

II. Major Content

▶ Temporary Chracter of *the Act on Disposal of Vested Property*

- *The Act on Disposal of Vested Property* has temporary character in that it contains articles mainly for disposal of vested property to private persons, so it has already fulfilled its epochal missions and lost almost all of its historical roles

- Nonetheless, the definition of ‘vested property’ in Article 2 has still considerable importance because problems surrounding vested property has not completely settled.

► Unsettled legal problems

- Most parts of the vested property which are, on the one hand, privatized by disposition and, on the other hand, made state property by special measures, were legally already settled out through the U. S, Military Government Authority and the succeeding regimes of Korean Government such as Rhee Seungman’s and Park Jung-hee’s
- Some other parts of the vested property are still legally unsettled mainly for mismanagement or illegal embezzlement at that early chaotic period. They are these two categories : ① Concealed property and ② Embezzled property. These are essentially ‘state property’ to be redeemed

► Some Suggestions on *the Act on Disposal of Vested Property*

- *The Act on Disposal of Vested Property* can be abolished without future serious effect, but the definition of ‘vested property’ in Article 2 has still great importance to redeem concealed property or embezzled property, so it would be a better policy to maintain the Status Quo of *that Act* for the time being

- A Special Act could be suggested as an option, if socially and technically needed, by providing a few clauses on special organizations responsible for redemption or personal reinforcements for a quicker settlement, or on authorities for easy access to personal information like official family register records

III. Expected Effects

- This study can give a policy guideline to the issue of whether to maintain the Act on Disposal of Vested Property or not and how to amend it if possible.
- Key Words : disposition of vested property, temporary law, state property, possession with the intention to hold property, redemption

목차

귀속재산처리법 존치 필요성 및
개선방안 연구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요 약 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9
1. 연구의 필요성	19
2. 연구의 목적	20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21
1. 연구의 대상	21
2. 연구의 범위	21
제3절 연구의 방법론	22
1. 문헌 연구방법과 인적협력 연구방법	22
2. 법해석적 연구방법 및 입법공학적 연구방법	23
제4절 선행연구 개관 및 이 연구의 차별성	24
1. 선행연구 개관	24
2. 이 연구의 차별성	25

제2장 귀속재산처리의 역사적 전개과정 개관 / 27

제1절 귀속재산의 개념	29
1. 귀속재산처리법 상 귀속재산의 개념	29
2. 소위 ‘적산’의 개념	31
제2절 귀속재산의 처리(제1기) : 미군정기(1945~1948년)	32
1. 미군정 법령에 의한 귀속재산의 형성	32
2. 귀속재산의 규모	35

목차

귀속재산처리법 존치 필요성 및
개선방안 연구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3. 미군정에 의한 귀속재산의 처리	38
제3절 귀속재산의 처리(제2기) : 이승만 정부 시기(1948~1960년)	39
1. 귀속재산의 대한민국으로의 이전	39
2. 귀속재산 처리의 방향	40
3. 귀속재산 처리의 과정	41
제4절 귀속재산의 처리(제3기) : 박정희 정부 시기(1960년 이후)	43
1. 귀속재산 처리의 방향	43
2. 귀속재산과 한일청구권 협정	44
제5절 현재 귀속재산 처리의 현황	45

제3장

귀속재산처리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 및 적용 사례 / 49

제1절 귀속재산처리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	51
1. 「귀속재산처리법」의 주요 내용	51
2. 귀속재산처리 관련 특별법의 주요 내용	77
제2절 귀속재산처리의 적용사례로서 관련 판례 검토	88
1. 주요 판례의 개요 및 쟁점	88
2. 정리 및 소결	103

제4장

귀속재산처리의 법제적 개선방안 / 107

제1절 「귀속재산처리법」 중 존치할 필요가 있는 규정	109
제2절 「귀속재산처리법」의 존치 여부에 관한 의견	113
제3절 귀속재산의 처리를 위한 법제적 개선방안	115

목차

귀속재산처리법 존치 필요성 및
개선방안 연구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5장

결 론 / 117

참고문헌 121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 제3절 연구의 방법론
- 제4절 선행연구 개관 및 이 연구의 차별성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017년 행정자치부는 행정의 간소화 및 합리적 정부체계 구축을 위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등 위원회 조직 정비를 위한 조사 과정에서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에 따른 「귀속재산소청심의회」가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문제 삼고 기획재정부에 검토를 요청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법의 폐지 여부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이견대립이 있어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해방 이후 「귀속재산」이라는 막대한 양의 재산에 대한 법적 지위를 정하는 법이다 보니 그 중요성과 비중에 비추어 쉽사리 폐지 결정을 내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귀속재산처리법」의 취지와 그 대상 및 존치 필요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러한 정책적 재검토 필요성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을 이어받아 「귀속재산」이라는 재산 집단에 대한 일정한 정책방향에 따른 처리를 위하여 제정된 법률인 「귀속재산처리법」이 과연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기능할 여지가 없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 목적 달성이 불충분하여 아직도 미래를 향하여 기능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귀속재산의 형성과 처리 과정에 대한 역사적, 법적, 제도적 고찰이 이루어 질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해당 법률의 존재의의를 밝히고 더 좁개는 귀속재산처리를 위한 기구 가운데 하나인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존치 필요성 여부도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

2. 연구의 목적

연구의 직접적 목적은 현재 존속하고 있는 「귀속재산처리법」의 존치 필요성 여부를 이론적, 법체계적 해석을 통하여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 법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고려하여 우선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역사적으로 한국사회에서 귀속재산이 가지는 의의와 그 처리에 대한 과정 및 그 결과를 점검해보고자 하였다. 법은 사회속에 존재하고 사회의 일정한 규율을 위한 수단이므로 법의 존재 의의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비로소 밝혀진다. 사회적 기능을 도외시하고 법의 기능과 목적을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해방 이후 한국사회에서 시간적 변동에 따른 귀속재산의 의의와 가치 및 법적 처리 형태를 법적 내용과 함께 사회적 맥락과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법적 체계 자체에서도 법의 기능과 목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귀속재산처리법」의 전체적 내용과 현재 문제되고 있는 법적 문제들에 대한 적용 사례 검토를 통하여 법률의 현재적 기능을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적어도 법의 현재적 의의나 적용 사례가 전혀 없거나 아니면 법의 목적과 전혀 다른 것일 경우에는 법의 개정 등을 통한 규범의 변경 내지 보완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법체계적 분석을 통한 법률의 존치 필요성 여부를 따지는 데에도 사회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전혀 배제될 수는 없다. 다만 사회에서 시작하여 법률을 분석하느냐 법률의 체계를 통하여 사회적 맥락으로 들어가느냐의 관점과 방향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상과 같은 검토를 통하여 밝혀진 내용에 따라 귀속재산처리법의 존치 여부 및 법적 개선방안이 제시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상황, 법률의 규율대상의 존재 여부, 법률 폐지시 있을 수 있는 법적 공백, 사회정책적 고려 또는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한 비전 등 포괄적이고 다양한 각도에서의 의견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1. 연구의 대상

연구의 대상 범위는 1차적으로 법규범인 「귀속재산처리법」과 관련 하위법령 및 귀속재산처리와 관련한 특별법의 내용과 체계이다. 그러나 법규범은 규범 자체로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범을 정립하고 기능하게 하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므로 「귀속재산처리법」 및 관련 법령의 내용과 의미를 밝히는 작업에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분석이 동반되게 된다. 따라서 한국사회가 걸어온 역사 및 사회문제 등이 이 법령들과의 관계속에서 2차적으로 연구될 것이다.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귀속재산처리법」이라는 단일법의 존치필요성에 관한 탐구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그러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귀속재산처리법」의 법체계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 내용을 먼저 밝혀야 하기 때문에 동 법률과 관련된 범위에서 사회적 측면과 법적 측면이 함께 다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양 측면을 각각 연구의 대상으로 삼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두 측면에서 밝혀진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및 미래의 한국 사회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규범의 존재형태에 관한 법제적 개선방안이 모색될 것이다.

2. 연구의 범위

위와 같은 「귀속재산처리법」과 관련된 사회적 측면과 법적 측면이 연구의 대상이 되므로 연구의 범위도 그러한 내용을 밝히는 범위에 한정된다.

먼저 제2장에서는 한국현대사의 과정을 통해 미군정에 의한 귀속재산의 형성 및 귀속재산의 대한민국으로의 이양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귀속재산처리법」의 제정을 통한 귀속재산의 처리 모습 및 그에 대한 법적 결과의 시정 및 종결을 위한 「귀속재산처리특별법」의 제정 과정을 사회적 맥락에 따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역사적 내지 거시

적 관점에서 법률의 사회적 기능 및 목적이 조명될 것이고 아울러 현재적 의의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귀속재산처리법」 및 관련 특별법의 법적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서 법률의 각 개별조항이 가지는 의미와 법률의 체계적 목적을 살펴보고 그 구체적 적용사례를 분석해 본다. 이를 통해 구체적 분쟁의 유무 및 법률의 분쟁해결적 의의에 비추어 법률이 현재적 기능 및 의의를 파악해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 파악을 바탕으로 하여 제4장에서는 앞선 분석에서 밝혀진 귀속재산 처리의 현재적 상황 내지 현재적 의의에 비추어 「귀속재산처리법」의 존폐 여부 또는 개선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를 제시해 볼 것이다.

제3절 연구의 방법론

1. 문헌 연구방법과 인적협력 연구방법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는 문헌 연구방법을 우선적으로 채택하였다. 이루어진 문헌연구의 양은 많지 않았지만, 그것마저도 역사적으로 전개된 귀속재산처리 과정에 관하여 참고만 하고자 하였으며, 되도록이면 2차적 문헌연구에서도 확인가능한 형태의 1차적 자료를 추출하여 연구에 이용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경제사적 연구에 치우쳐 있어 이 연구와 연구의 목적이나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제사적 연구의 많은 부분은 한국경제발전의 성격에 관한 이데올로기적 논쟁의 성격을 띠고 있어 가급적이면 그러한 이데올로기적 논쟁을 피하거나 일정한 경향성에 경도되지 않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2차적 연구의 내용이나 결론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최대한 지양했으며 가급적 1차적 자료에 한해서만 살피면서 시대적 의의나 가치평가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는 여타의 2차적 연구는 참고만 하는 수준에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하였다.

문헌자료에 의한 연구방법은 이용의 간편성과 자료의 정확성이 장점이지만 이 연구에서는 관련 문헌자료가 부족하고 또 설사 문헌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문헌자료에 의해 모든 사실과 문제점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었으며 더 나아가서 그러한 문헌을 체계적으로 분석할만한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하는 단기적 연구의 한계가 있으므로 비교적 한정적인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정도로만 개관하는 수준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는 관련 분야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작업을 통해 어느 정도 이를 보완할 수 있고 또 그럴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귀속재산의 처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몇 가지 의문점을 법적 전문가에의 자문 및 워크숍 발표를 통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풀 수 있었고 귀속재산 환수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귀속재산 문제의 현재적 의의와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실무현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은 일정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2. 법해석적 연구방법 및 입법공학적 연구방법

이 연구를 위해서는 상당한 범위의 법령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각 법령의 조문 내용 및 체계적 관계에 관하여 법해석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합리적 해석을 시도하였다. 다만 이 법령들은 과거의 법령들이 대부분이어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에는 해석적 자료를 제공해 주는데 불과하였다. 따라서 현재 남아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하여 법해석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법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문제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입법공학적 연구의 필요성이 나온다. 입법공학(legislative engineering)적 연구란 사회문제의 해결을 입법에 의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법적 연구를 말한다.¹⁾ 이것은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연구로서 사회문제의 해결을 입법에 의한 제도설계에 의해 도모하고자

1) 여기의 이 연구방법론 설명은 양태건, 「매장문화재 보호 및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8, 25쪽 내용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였다. 방법론에 대한 형식적 설명이기 때문에 굳이 표현이나 내용을 바꿀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며 그것도 사회나 시대의 요청과 문제의 구조에 가장 적합한 제도설계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기계를 설계하고 만드는 것이 공학의 임무인 것처럼 사회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통해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바로 입법공학의 역할인 것이다. 이 연구는 현재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를 어떻게 입법을 통해 마련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사회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제도적 결과물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일정부분 사회적 문제의 해결 및 사회개선이 도모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제4절 선행연구 개관 및 이 연구의 차별성

1. 선행연구 개관

주로 경제학 분야에서 선행 연구가 존재한다. 그 성격을 살펴보면 대개가 경제사적 관점에서 초기 귀속재산 처리가 한국경제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한 것들이다. 대개 한국경제발전의 동력과 관련하여 일본이 남긴 식민지 유산을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할 것인가 하는 ‘근대화 논쟁’과 관련이 있다.²⁾

대표적으로 이대근의 연구(2015)³⁾가 그러하다. 이대근은 귀속재산이 한국경제의 초기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귀속재산의 성격에 대하여 전적으로 일본자본의 투입에 의한 귀속재산의 형성이란 명제를 주장하는 등 그 주장의 내용적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통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전체적으로 일본자본에 의한 근대화를 주장하는 등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비교적 방대한 양의 연구를 남기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점을 주의하면서 귀속재산 처리의 개괄적 내용

2) 배석만, “해방 후 귀속재산 처리의 전개과정과 귀결”, 한일민족문제연구, 제26집, 한일민족문제학회, 2014. 6, 44쪽.

3) 이대근, 귀속재산 연구 - 식민지 유산과 한국경제의 진로 -, 이숲, 2015.

파악 및 1차 자료를 추출하기 위한 자료집 성격 차원에서 이를 활용하였다.

한편 배석만의 연구(2014)⁴⁾는 역사학자의 연구로서 해방 후 귀속재산 처리의 전체적 과정과 현재적 상황에 대한 총괄적 성격의 연구를 제시하고 있어 귀속재산 처리의 역사적 과정 전체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개괄적 내용 파악에 도움을 준다.

2. 이 연구의 차별성

반면 법학적 연구는 매우 희소하다. 아마 법학적 연구의 범위가 여기에 미치기에는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제기되는 현실적 문제들과 대면하는 것만으로도 벅찼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20세기 역사는 불행한 역사적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눈부신 발전을 성취해내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그 과정을 적극적으로 음미 내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가치 있는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법학의 분야에서도 법제사적 관점 내지 헌정사적 관점에서 보다 장기적인 법적 변동과 거시적 시각을 가지고 하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역사학과 경제사 분야에서의 연구가 어느 정도 존재하므로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법적으로도 귀속재산 처리의 법적 과정이 어떠했는지 그 과정 및 결과는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게 적절하게 처리되고 완결되었는지를 보다 꼼꼼이 짚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 연구는 귀속재산처리의 전체적 과정을 법령과 확인가능한 문헌자료에 의해 개관하고 사회역사적 과제 - 이것을 위해 귀속재산처리법령을 존재했다 - 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피면서 현재 남아있는 귀속재산 처리의 문제 내지 미완의 과제는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런 다음 그러한 잔존 문제 내지는 미완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방법(법해석적 방법을 통해서든 아니면 더 나아가서 입법적 방법을 통해서든)을 개선방안으로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4) 배석만, “해방 후 귀속재산 처리의 전개과정과 귀결”, 한일민족문제연구, 제26집, 한일민족문제학회, 2014. 6, 43-91쪽.

이러한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은 종래 수행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귀속재산처리법」의 존치여부라는 제한된 목적에서 출발하고 논의하더라도 그 의의는 거기에만 그치지는 것은 아니며 더 나아가서 관련 제반법령의 좀 더 넓은 차원 및 한국 현대사의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 사회변동의 방향이나 사회적 문제의 해결 방향에 대해서도 일정한 시사점을 던져 줄 수 있는 것이다.

제2장

귀속재산처리의 역사적 전개과정 개관

제1절 귀속재산의 개념

제2절 귀속재산의 처리(제1기) : 미군정기(1945-1948년)

제3절 귀속재산의 처리(제2기) : 이승만 정부 시기
(1948-1960년)

제4절 귀속재산의 처리(제3기) : 박정희 정부 시기(1960년
이후)

제5절 현재 귀속재산 처리의 현황

제2장

귀속재산처리의 역사적 전개과정 개관

제1절 귀속재산의 개념

1. 귀속재산처리법 상 귀속재산의 개념

「귀속재산처리법」은 ‘귀속재산을 유효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산업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조) 이를 위해 동법은 제2조에서 이 법률의 규율대상인 귀속재산의 개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본법에서 귀속재산이라 함은 단기 4281년(=1948년) 9월 11일부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을 지칭한다. 단, 농경지는 따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북위38도선이북 수복지구내에 있는 재산으로서 단기 4278년 8월 9일 현재 일본인인 개인, 법인, 단체, 조합, 그 대행기관이나 그 정부의 조직 또는 통제한 단체가 직접, 간접 혹은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한 일체의 재산은 전항에 규정하는 귀속재산으로 취급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단기 4278년(=1945년) 8월 9일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기타에 대하여서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以下 彙屬된 株式 또는 持分이라 稱한다)으로 간주한다.

단기 4278년 8월 9일 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이사행사권 또는 사원권이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에 대하여서는 그 이사

행사권 또는 사원권도 귀속된 것(以下 归屬된 理事行使權 또는 社員權이라 稱한다)으로 간주한다.”(밑줄은 필자)

따라서 이 법의 귀속재산은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뉠 수 있지만 위 법 규정과 같이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던 일본인 소유재산으로 미군정에 의해 대한민국으로 양도된 것 중 농지를 제외함으로써 크게 다음과 같은 4종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고 실제로 법은 그에 의하여 귀속재산의 처리 절차를 진행하였다.(법 제8조)

- (1) 기업체
- (2) 부동산
- (3) 동산
- (4) 주식 또는 지분

그러나 위 법 문언에 따르면 농지 역시 개념상으로는 귀속재산에 포함되며, 다만 그 처리만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별도로 처리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래 38 도선 아래 미군정 관리 지역(=남한 지역) 내의 재산만을 지칭하였지만, 6.25 이후 휴전선 설정을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실효적 관리 지역의 범위가 다소 변경되었기 때문에 관리가능지역에서 이탈한 지역의 재산을 제외하고 새로 관리가능한 부분으로 회복된 수복 지역(=대개 강원도 일부 지역) 내에 있는 재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범위를 조정하고 있다.

아울러 귀속재산의 여부의 기준시점은 미군정 법령 제2호가 선언한 바 있는 1945년 8월 9일이고,⁵⁾ 위 법은 정의 부분에서 이러한 미군정의 법적 결정을 승계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5) 일본 소유재산의 기준일이 광복절인 8월 15일이 아니라 8월 9일로 잡게 된 이유는 일본 정부가 연합국에 대해 포츠담 선언의 수락 의사를 통보한 날짜가 8월 9일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미군정청은 이 날을 기점으로 귀속재산 문제를 파악하게 된 것이다. 배석만, 앞의 글, 50쪽, 각주 13)의 내용.

2. 소위 ‘적산’의 개념

이와 관련하여 논의해 보아야 할 개념으로서 소위 ‘적산(敵產)’의 개념이 있다. 해방 이후 우리 국민은 언론지면 및 일반 언어 용법에서 이 귀속재산을 ‘적산’으로 지칭하고 이를 적국인 일본국 및 일본인 소유 재산으로 인식하였다.

귀속재산의 개념은 1945년 8월 9일을 기점으로 하여 한국 내에 가지고 있던 일본국 재산 및 한국 내 거주 일본인(자연인과 법인을 모두 포함) 소유 재산을 미군정이 그 재산 권을 일체로 미군정 소속으로 ‘귀속시킨다(vested)’는 의미에서 탄생한 개념이다. 따라서 귀속재산의 탄생은 미군정이 만들어낸 작품이다.⁶⁾ 이에 대하여 한국인들이 이를 공공연히 ‘적산(敵產)’으로 고쳐 부른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견해가 있다.⁷⁾ 이러한 용어를 통해서는 그 재산의 진정한 실체가 제대로 인식되지 못한다는 것이다.⁸⁾

그러나 미군정 법령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사용되고 승계되었다는 이유로 ‘귀속재산’이라는 용어만이 공식적인 사용권과 권위를 획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는 다른 용어도 일정한 관점이나 사회적 함의를 전달하는 바가 있어 가치를 가진다면 그것도 정당한 것이다. 일례로 많은 행정법령에서 허가, 인가, 특허, 재가 등의 용어가 사용되지만 그것이 일의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해석의 대상인 동시에 이른바 ‘강학상 의미에서’ 여기의 허가는 ‘특허’에 해당한다는 식의 설명이 학술적으로 통용되기 때문이다.

‘적산’의 경우에도 미군과 식민지 상태였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일본은 엄연한 적국이며 일본국 및 일본국민의 한국내 재산을 일체로 압류했던 것이므로 그 본질은 ‘적국 및 적국민의 일체의 재산’임이 맞으며 그러한 측면에서 오히려 귀속재산의 실체적 내용

6) 이대근, 앞의 책, 23쪽.

7) 이대근, 앞의 책, 23-24쪽.

8) 이들 주장의 문맥의 의미를 추정해 본다면 아마도 ‘일본자본에 의한 근대화’를 주장하는 이들이므로 부정적인 수식어가 붙은 ‘적산’이라는 용어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을 더욱 정확하게 알려주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⁹⁾ 귀속재산의 개념이 미군정에 귀속되었다는 형식적, 절차적 측면에서 기원하여 오히려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반면, 적산이라는 용어는 그 재산의 실체적 내용을 더욱 간명하게 알려준다는 점에서 유용하므로 학술적으로도 병칭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 범위도 양자 모두 어차피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영역에 한정되어 일치하므로 둘의 내용상 차이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글에서는 법령의 내용과 해석이 주된 연구 대상이므로 편의상 ‘귀속재산’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제2절 귀속재산의 처리(제1기) : 미군정기(1945-1948년)

1. 미군정 법령에 의한 귀속재산의 형성

귀속재산이 형성되게 된 배경은 일본을 대상으로 전쟁을 했던 연합국의 일원인 미국이 일본이 해외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몰수하여 연합국의 전쟁배상금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졌기 때문이다.¹⁰⁾

(1) 군정법령 제2호

그리하여 미국은 미군정청 사령관 하지(John R. Hodge)에게 1945년 9월 1일 이러한 명령을 전달하였고 미군정은 9월 8일 한국으로 들어와 9일 군정을 선포한 뒤 9월 25일 패전국의 소유재산을 동결하는 군정법령 제2호를 공포하였다.

9) 윤향지, “미군정기의 귀속재산에 관한 일 고찰”, *부동산학보*, 제24권, 한국부동산학회, 2005. 8, 257쪽에서도 일 제치하 조선에 있던 일본인의 재산은 연합군에게 적인 일본의 재산이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순수한 일본인의 재산이 아니라 조선의 재산을 그들의 소유로 만들어 버린 그런 종류의 것이기 때문에 ‘적산’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게 되었으며 먼저 미군정에 귀속된 후 한국으로 귀속됨이 당연하다는 뜻에서 적산은 귀속재산과 같은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다.

10) 배석만, 앞의 글, 50쪽; 윤향지, 앞의 글, 258쪽에서도 전후 연합국의 적산처리의 기본원칙은 “실물배상주의(實物賠償主義)”에 입각하였다고 하고 있다.

<군정법령 제2호. 재산이전의 금지(1945. 9. 25.)>¹¹⁾

제 1 조. 1945년 8월 9일 이후로 적국(일본, 독일, 이탈리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태국 등) 및 기타 그들의 대행기관, 국민, 법인, 사회단체 등이 소유·관리하는 모든 재산(금, 은, 백금, 통화, 증권, 예금, 채권, 유가증권 등)의 매매-취득-이전-수출입-처분 등 일체의 거래행위를 금지함

제 2 조. 제1조에 언급한 여러국가의 정부에 속한 재산을 소유·관리·보관·점유·사용하고 있는 자는 군정청의 다음 지시사항을 염수할 것을 요함

- ① 군정청의 지시에 응하여 보유·소지하고 그 지시가 유효한 기간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분하지 못함
- ② 보존·수호·유지하되, 그 가치와 효용을 파손시키지 말 것
- ③ 정확한 기록문서/장부를 만들어 보유할 것
- ④ 군정청의 지시가 있을 때는 언제나 장부·기록·회계서류 등을 제출할 것
- ⑤ 재산·소득·기타 수입에 대한 회계서류를 작성, 보존할 것

제 3 조. 재산거래를 허가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음

- ① 조선 국민이나 연합국인 또는 그 정부의 대행기관에게 이익이 될 경우,
- ② 조선 정부의 법적인 대행기관이 충분히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 ③ 매도인은 거래에 앞서 그 재산의 현황을 상세히 서류로 작성하여 조선정부에 제출할 것
- ④ 동 서류 제출 후 60일 이내에 조선정부나 그 대행기관에서 금지명령이 없을 때에는 그 거래는 성립된 것으로 간주함
- ⑤ 거래대금은 즉시 조선은행의 정부계정에 입금하고, 그것은 전 소유자에게 지불하기 위해 일시보관함
- ⑥ 동 자금은 전 소유자의 생활비 명목으로만 인출이 가능토록 할 것

제 4 조. 1945년 8월 9일 이후에 이루어진 본 법령 규정에 해당하는 모든 거래는 이 날짜로 무효로 처리함

11) 이 법령의 내용은 알아보기 쉽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대근, 앞의 책, [부록 4]부분, 620쪽에 의하였지만, 정확성을 위하여 미군정법령집(1956년판)과 대조하여 적절하게 정리하였다. 따라서 위 내용이 공인된 원문은 아니라 점을 유의해 주기 바란다. 참고한 법령집은 국한문 혼용으로 다소 가독성이 떨어지지만 당시 이해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점에서, 内務府治安局 발행, 美軍政法令集, 兵學社, 단기4289(1956).를 이용하였다. 미군정법령집, 5-7쪽 참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적용범위는 미군정청의 관할 범위인 38도선 이남의 남한지역이며 1945년 8월 9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본을 포함한 모든 적국 및 국민의 재산을 동결하고 일정한 조건에 의하여만 재산거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재산을 전체적으로 압류하여 끓어 두고 있다. 이 법령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직 일본인 재산의 소유권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2) 군정법령 제4호

본격적으로 소유권을 미군정으로 귀속시키는 작업은 바로 뒤이어 1945. 9. 28. 군정법령 제4호에 의하여 일본의 육/해군 관련 재산에 대하여 압류 및 미국의 소유로 규정하면서 시작되었다.¹²⁾ 다만 그 이후 12월까지 더 이상의 소유권 이전을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본인 재산에 대하여 과연 잠정적으로 미국의 소유로 몰수하여 처리 할 것인지에 대한 방침이 아직 확고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¹³⁾

(3) 군정법령 제33호

귀속재산의 형성에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군정법령 제33호이다. 1945. 12. 6. 공포된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해 비로소 일본 국가의 재산이든 그 국민의 재산이든 모두 이를 포괄적으로 미군정청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정하여 사유재산인지 여부를 불문하여 모두 미군정의 소유로 몰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입장정리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¹⁴⁾

12) 그 의미는 영원히 미국의 소유로 한다기보다는 잠정적으로 미국의 소유와 군정청의 관리상태 아래로 이전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윤항자, 앞의 글, 260쪽.

13) 배석만, 앞의 글, 50쪽에서는 당시 국제법상 규정인 1907년 헤이그 육전법규(Hague Regulation land warfare)

14) 이하의 내용은 배석만, 앞의 글, 51쪽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따옴표 안의 문구는 해당 지면의 표현을 인용한 것이다.

우선 ① 제1차적으로 일본의 재산을 몰수하여 “연합국의 전쟁배상용으로 사용”하겠다는 미국의 원래 방침이 있었고, 다음으로 ② 일본의 재산은 공유재산인지 사유재산인지 를 막론하고 “한국인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의 소유”라는 한국민들의 일반적 통념과 그에 기초한 반발도 매우 강하게 반영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또한 거기에는 ③ 이미 “38도선 이북을 점령한 소련군정은 미군정과 달리 일본 또는 일본인 소유 재산을 몰수하여 무상 분배 내지 국유화하는 작업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군정청과 남한의 모든 사회계층도 그러한 작업에 크게 자극받지 않을 수 없었다는 냉전대립적인 정치적 배경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군정법령 제33호: 조선 내 소유 일본인 재산권 접수의 건(1945. 12. 6.)¹⁵⁾

제 2 조. 1945. 8. 9. 이후 일본정부, 그 기관, 그 국민, 회사, 단체, 조합, 그 정부기관 또는 그 정부가 조직한 단체 등이 직간접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관리하는 일체의 재산(금, 은, 백금, 통화, 증권, 은행감정, 채권, 유기증권 또는 미군정청의 관할내에 존재하는 기타 모든 종류의 재산) 및 그 수입에 대한 소유권은 1945. 9. 25일부로 미군정청이 취득하고 미군정청이 그 재산 전부를 점유함. 누구를 불문하고 군정청의 허가없이 그 재산에 침입 또는 점유하고 그 재산의 이전 또는 가치효용을 훼손함을 불법으로 함.

2. 귀속재산의 규모

이렇게 포괄적으로 미군정으로 양도된 귀속재산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그 정확한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처럼 불명확하게 된 데에는 1차적으로 귀속재산으로의 신속한 이행을 미군정이 상당기간 미루어 방지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포괄적 소유권 이행과 관리로의 진입은 신속하게 이루어졌어야 마땅한데 별다른 준비 없이 9월 초에 진주한 미군정의 초기 혼선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지체되어 1945. 12월 초에나 되어서야 귀속재산의 법적 지위와 상태를 포괄적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상당히

15) 이대근, 앞의 책, 621쪽; 내무부치안국 발행, 미군정법령집, 30쪽.

때늦은 감이 없지 않았던 것이다. 그 때문에 미군정 법령의 포고에 따른 현상적 관리 명령에도 불구하고 일본인에 의한 귀속재산의 무단처분, 파괴, 은닉, 한국인의 무단점유 및 횡령, 무단처분 등의 사태가 다수 일어나게 되었다.¹⁶⁾

워낙 그 범위가 포괄적이고 넓다 보니 미군정에 의하여 압류된 귀속재산의 전체 규모에 대하여 정확히 알려주는 자료를 찾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인 범위는 여러 자료를 비교하여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우선 해방당시 한국 재산의 80%정도가 일본의 개인이나 기업, 정부의 수중에 있었다는 연구자들의 공통적인 지적과 국부의 8할을 차지한다는 당시의 통념이 지배적임을 고려할 때 대강 그 정도의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¹⁷⁾

한 연구에서 1940년 8월 자료를 이용하여 광공업 총 사업체 700개사 중 일본인 소유 기업은 553개사로 전체의 79%를 차지하고, 한국인 소유 기업은 147개사로 21%로 나와 있음을 밝히고 있다.¹⁸⁾ 이에 비추어 볼 때 1945년이 1940년과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고 당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일본인 소유 기업의 자본 규모가 더 컸을 것임으로 고려한다면 기업체 수준에서는 충분히 일본인 소유 재산이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다른 연구는 여러 개별 통계 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수치들을 제공하고 있다.¹⁹⁾ 먼저 “1948년 미군정 통계는 가동 중인 귀속사업체 수를 2,447개사로 파악하고 있고” 다음으로 “한국은행조사부의 「1949년도 경제연감」은 귀속사업체를 총 3,089개로 표시하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1955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보고서에는 미군정기 이후 접수되어 당시까지 불하 매각된 귀속기업체와 잔여 귀속기업체의 숫자를” “2,707개 기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1955년의 자료는 6.25 시기의 사회경제적 변동과 파괴, 혼란

16) 배석만, 앞의 글, 55쪽.

17) 이대근, 앞의 책, 350쪽, 338-389쪽; 배석만, 앞의 글, 44쪽; 윤황지, 앞의 글, 258쪽.

18) 이대근, 앞의 책, 389쪽.

19) 해당 항목의 숫자들은 배석만, 앞의 책, 56-57쪽의 내용을 요약제시한 것이다.

상황을 감안해야 하므로 아무래도 미군정기에서 1949년 당시 당시까지의 자료가 비교적 그 정확한 숫자에 근접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에 더해 앞에서 살펴본 미군정기 초기의 혼선과 관리 상황의 불충분한 측면을 고려할 때 암추 3000개에 가까운 기업체가 귀속 기업체였다고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동 연구는 귀속농지는 신한공사가 관장 한 귀속농지를 기준으로 하여 전체 남한 경지의 12.3%라는 수치를 제시하고 있고, 상점, 음식점, 여관 기타 재산에 대해서는 13,461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외에도 일본인 등이 거주하던 주택과 대지 등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시 일본인 거주자 수가 약 2,100,000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점²⁰⁾을 고려해야 하며, 기타 동산 등의 정확한 규모나 액수는 잘 파악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에 이관된 총 귀속재산 건수를 제시하고 있는 자료를 살펴보면 본래 미군정법령에 의해 귀속재산으로 편입되었어야 할 재산의 규모보다 매우 축소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한 연구에 따르면, 당시 재무부 자료를 인용하여 1948년 미군정 으로부터 한국정부에 이관된 총 귀속재산이 291,909건에 달하고, 그 중 부동산이 287,555건에 달하여 98.5%로서 대부분이고 기업체는 2203개사였다고 한다.²¹⁾ 그런데 이것은 미군정 시기 3년 동안 처분한 것을 제외하고 이양한 재산의 규모이다. 하지만, 미군정기에 처분한 귀속재산의 전체 건수는 2,000~2,500건 정도로 전체 건수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렇다면 귀속재산(농지는 별도로 처리하였으므로 제외)의 큰 부분은 기업체였지만, 건수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결국 부동산이다. 그런데 이 부동산의 많은 부분이 상가건물과 주택, 그리고 대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결국 애초에 귀속재산으로 편입되었어야 할 많은 재산의 부분이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과 경로를 통하여 탈루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 이 추정은 박경숙, “식민지 시기(1910년-1945년) 조선의 인구 동태와 구조”, *한국인구학*, 제32권 제2호, 2009, 52쪽에 따른 것이다. 거기서는 여러 연구와 자료를 종합하여 결론적으로 당시 한국 내의 조선인 인구를 약 2526 만명, 일본인 인구를 약 210만명, 만주 내 조선인 인구를 약 195만명으로 각각 추정하고 있다.

21) 이대근, *귀속재산연구*, 이숲, 2015, 431쪽.

3. 미군정에 의한 귀속재산의 처리

미군정청은 애초에 귀속재산처분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토지개혁(1946년 3월)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자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생겨났다. 북한에서 무상 몰수-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을 단 한달만에 완수하여 버렸기 때문에 남쪽에서도 일정한 사회경제적 개혁을 수행하지 않으면 사회주의 세력이 힘을 얻게 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1948년 정부구성을 위한 총선거가 가까워 갈수록 농지를 포함한 귀속재산의 처분은 활기를 띠었는데, 이것이 후에 정치적 고려에 의한 처분으로 잘못된 예를 남겼다는 비판을 받았다.²²⁾

먼저 농지에 대하여는 과거 일본인 소유의 농지를 대상으로 분배하되, 미군정은 농지의 가격을 당해 토지의 주생산물 연간 생산고의 3배로 정하고 토지가격의 지불은 매년 20% 씩 15년간 현물로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매각되는 토지의 소작인에게 우선권을 주었다.²³⁾

다음으로 다른 종류의 귀속재산에 대해서는 “전체 불하금액의 20%를 불하계약시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연7%의 이자로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처리되었는데, 이러한 귀속재산 불하는 “귀속재산의 관리인, 임차인에게 우선권을 제공하는 ‘연고자 우선주의’”로 인하여 처분의 불공정함, 특혜 시비 등이 발생하게 되었다.²⁴⁾ 당시의 극심했던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연7%의 이자로 장기 상환하는 조건은 사실상 “거의 무상으로 불하받는 것”에 가깝게 되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²⁵⁾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미군정은 (구)일본인 소유 농지의 약 87%를 민간에 처분하고,²⁶⁾ 또한 귀속사업체 총2716건 중 3년간 513건을 처분하여 2203개사를 남겨서²⁷⁾ 나머지 다

22) 강만길, 고쳐 쓴 한국현대사, 창비, 2012, 393쪽.

23) 강만길, 앞의 책, 392쪽.

24) 배석만, 앞의 글, 61쪽.

25) 배석만, 앞의 글, 61쪽.

26) 배석만, 앞의 글, 62쪽.

27) 이대근, 앞의 책, 431쪽.

른 종류의 재산들과 함께 (잔존) '귀속재산'으로서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에 이양하였다.

제3절 귀속재산의 처리(제2기) : 이승만 정부 시기(1948-1960년)

1. 귀속재산의 대한민국으로의 이전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과의 협정을 통하여 귀속재산을 미군정청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이양받았다. 1948년 9월 11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 및 미국 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Initial Financial and Property Settlement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은 미군정이 보유하였던 모든 재산을 이양하고 동시에 종전에 미군정청이 처분한 모든 행위가 유효하며 이를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다고 정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미군정청 시기에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대한민국 정부 및 미국 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²⁸⁾

제 1 조. 미국정부는 좌기(左記) 재산에 대하여 미국이 보유하였던 일절의 권리 명의 급(及) 이익을 자(茲)에 대한민국정부에 이양함.

위에 좌기 재산이라함은 지방세무서 부동산대장 급 도면 또는 법원부동산등기부에 국유재산으로 기재된 바 재조선미군정청 급 남조선과도정부의 일절 재산, 당해재산에 가한 일절의 개량, 일절의 현금 급 은행예금, 또는 현재까지 미국정부가 한국경제에 제공한 일절의 구조물자 급 재건물자를 포함하여, 남조선과도정부 각부처 급 대행기관이 보유한 일절의 설비, 물자 급 기타 재산을 지칭함.

...(생략)

제 5 조. 대한민국정부는, 재조선미군정청 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귀속된 전 일본인 공유 또는 사유재산에 대하여, 재조선미군정청이 이미 행한 처분을 승인하고 비준함.

28) 법제처 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 게시된 번역에 의거하여 최대한 옛 형태를 유지하였으나 지나치

2. 귀속재산 처리의 방향

이승만 정부는 미군정의 정책방향을 이어서 귀속재산의 대대적 불하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가 지적된다.

첫째, 혼합경제 체제를 규정한 제헌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자유시장적 경제체제를 육성하기 위해 귀속재산의 대대적인 민간불하를 실시하였다.²⁹⁾ 자유시장경제 이념에 따라 그리고 당시의 저조한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귀속재산의 민간불하는 필요해 보인다. 기업체의 경우 수도, 전기, 교통, 운수 등의 공공재를 생산하는 기업이나 광업 등 기간산업을 제외한다면 민간경영이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에 기업운영의 정상화 및 시장활성화를 위한 민간불하 정책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정부의 재산상태가 부실했기 때문에 생겨난 과다한 정부 재정적자의 타개책으로서 적극 활용된 측면도 있다. 정부수립 첫해 정부예산에서 48%가 중앙은행 차입으로 충당됨에 반해 정상적 조세수입이 세입예산의 19.1%에 불과한 사실에서 이러한 점이 드러난다.³⁰⁾ 그러나 실제로 귀속재산의 처분이 급증하기 시작한 때는 6.25전쟁중인 1951년부터였는데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³¹⁾ 이때부터 증가하여 1955년에는 건수로 무려 93,083건에 이르러 최대규모를 기록하고 다시 점차 줄어들어 1948년부터 1958년까지 총 263,774건의 처분 실적을 기록해 두고 있다.³²⁾

그러나 과연 재정수입 개선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는 다소 의문이다. 불하대금 납부가 최장 15년 기한으로 되어 장기간 미납 및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액의 실질적 감소 사태

게 어색하거나 뜻이 안통하는 문구는 필자가 협정문 영어 원문에 비추어 약간 수정하였다. 협정문 원문은 미국 의회도서관 사이트(www.loc.gov/law/help)에서 pdf문서형태로 이용이 가능하다.

29) 이대근, 앞의 책, 499쪽.

30) 이대근, 앞의 책, 500쪽.

31) 재무부, 재정금융의 회고, 단기4291(1958), 167쪽.(국립중앙도서관(www.nl.go.kr)에서 원문이용 가능함)

32) 이 건수는 앞서 본 미군정기 귀속재산 건수와 차이가 난다. 그 원인은 재산관리 및 매각과정에서 부동산의 분할과 한국전쟁으로 수복된 지구의 귀속재산이 추가되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배석만, 앞의 글, 69쪽.

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³³⁾ 귀속재산의 불하에 따른 대금납부가 지가증권으로 가능함에 따라 귀속재산 총 매각대금의 65%가 지가증권에 의한 것이었다고 한다.³⁴⁾ 또한 1949년에서 1955년까지 귀속재산을 처리한 수입 중에서 일반재정 세입에 실제로 전입된 금액이 평균1.5%에 불과했다고 하니³⁵⁾ 과연 본래 재정타개를 목적으로 이행된 것이 맞는지조차 의심될 정도로 그 결과가 의도한 목적에 부합되지 못했다.

이에 따른 매각건수는 1948년부터 1958년까지 약26만4천건이고 그 중 ① 부동산 건수가 26만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② 기업체는 약2천건 그리고 ③ 기타 채권이나 동산류가 나머지 약2천건을 차지하고 있다.³⁶⁾ 그 중 부동산은 다시 주택, 점포, 임야, 공대지, 농지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대지가 16만5천건 정도로 최대의 비중이고 주택 약6만건, 부동산('부동산'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잔여 농지로 보인다) 약2만2천건, 점포 8천건, 임야 4천건 정도이다.

3. 귀속재산 처리의 과정

이승만 정부 시절 귀속재산의 처리는 1949년 12월 「귀속재산 처리법」을 제정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 법에 따르면 귀속재산의 모든 부분을 민간에 불하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원칙에 따라 국공유로 해야 할 귀속재산에 관한 원칙이 정해졌다. 그러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천연자원 관련 권리 및 임야 ② 문화재 등 ③ 기업체 가운데에는 광산, 제철소, 기계공장 등 공공성을 가진 기업체는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대적인 민영화에 장애가 생길까 우려하여 국영 또는 공영으로 지정이 어렵도록 시행령을 만들었으나 국유화된 기업 건수는 17건에 불과했다.³⁷⁾ 따라서 이 부분이 나중에 본격적인 산업화를 실시하고자 할 때 문제가 된다.

33) 강만길, 앞의 책, 402쪽.

34) 배석만, 앞의 글, 67쪽.

35) 강만길, 앞의 책, 402쪽.

36) 재무부, 재정금융의 회고, 168쪽.

37) 이대근, 503쪽.

귀속재산처리법(1949.12.19.)

...

제 5 조 귀속재산중 대한민국헌법 제85조에 열거된 천연자원에 관한 권리 및 영림재산으로 필요한 임야, 역사적 가치있는 토지, 건물, 기념품, 미술품, 문적 기타 공공성을 유하거나 영구히 보존함을 요하는 부동산과 동산은 국유 또는 공유로 한다.

정부, 공공단체에서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인된 교화, 후생기관에서 공익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과 동산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제 6 조 귀속기업체중 대한민국헌법 제87조에 열거된 기업체와 중요한 광산, 제철소, 기계공장 기타 공공성을 가진 기업체는 이를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귀속재산 처리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될 수 있는데, 하나는 귀속재산 불하 대상이 주로 관련 재산을 관리하고 있던 이들에게 특혜가 베풀어짐으로 해서 정실주의라는 비판을 받아 경제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6.25 전쟁으로 인하여 그 과정에서 또다시 많은 재산 일실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귀속재산의 종류를 살펴볼 때 ① 기업체 부분은 큰 유실 없이 매각 과정을 통하여 산업화로 연결된 것으로 보이고³⁸⁾ ② 동산이나 채권 등은 본래가 비중이 크지 않았고 또 처음부터 내용 파악이 힘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평가를 차치하면 법적으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또 문제 삼기도 어렵다. 그러나 귀속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인 ③ 부동산은 주택이나 점포와 같은 건물 뿐만 아니라 특히 공대지의 경우에는 더욱 그 형태의 지속성이 높고 또 공부에 의하여 파악이 가능하므로 공부 관계의 정리 및 관리 상태가 어지러웠던 당시 고의적 은닉이나 부주의에 의한 탈루는 경우에 따라 현재까지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38) 배석만, 앞의 글, 71쪽.

제4절 귀속재산의 처리(제3기) : 박정희 정부 시기(1960년 이후)

1. 귀속재산 처리의 방향

(1) 앞선 방향에 대한 시정

앞선 정부의 민간불하 방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처리된 기업체 부분이 존재하였다.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나치게 대규모 기업체의 경우 오히려 매수 희망자가 없어서 남겨진 경우가 있었다.³⁹⁾ 대표적으로 조선전업(주) 등 전력3사를 비롯하여 조선운수, 한국미장, 삼성광업, 조선기계 등이 그러했다.

이에 대하여 박정희 정권은 경제정책을 새로이 정함으로써 이전 정부의 대대적 민간불하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대규모 사업체나 기간산업은 그 자체로 공공성을 가지므로 오히려 이를 특수법인으로 개편하여 국영기업으로 전환하여 정부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전환한 것이다. 특히 산업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전력 등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이미 민영화한 부분도 다시 국영체제로 전환하고 규모를 키우기 위해 강제통합하는 조치도 단행하여 기간산업의 육성 및 국유화 방향을 밀고 나갔다.⁴⁰⁾ 이를 통해 이후 고도 산업발전 및 경제성장의 토대를 확립하였다.

(2) 자본축적의 방향 전환

자본주의 경제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자본’을 필요로 하는 경제제도이다. 한국경제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룰만한 자본축적이 충분치 않은 상태였고 귀속재산의 처리를 통

39) 재무부, 재정금융의 회고, 단기4291(1958)년, 170쪽. “남겨진 기업의 경우 뎅치가 너무 큰 반면 당시 한국경제 수준에서는 경제성이 없는 경우,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경제성 없는 귀속대기업의 매수 희망자가 없었다.”

40) 이대근, 앞의 책, 530쪽.

여 민간 측에 일정한 자본이 축적된 점은 인정되지만 충분한 경제성장을 이루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자본축적의 동력 내지 경제활성화의 동력을 일본과의 청구권 협정 및 기타 외국으로부터의 외자 도입에 의하여 해결하는 노선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러한 방향전환에 의하여 귀속재산 처리는 마무리 단계를 밟도록 하였고 이로써 귀속재산이 경제에서 차지하던 의의도 점차 역사속으로 사라져 가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3) 귀속재산 처리의 법적 완결 도모

위와 같은 흐름에 따라 이 시기 박정희 정부는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1963년)하여 그때까지 미이행된 계약 등을 최대6월 이내에 계약해제 및 공매처분하도록 함과 동시에 1964년 12월말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나머지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화조치 하여 귀속재산 처리의 법적 완결 내지 종결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이를 통해 진정으로 모든 귀속재산 처리가 끝났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법」은 오로지 민간불하의 대상으로 된 귀속재산 즉, 불하계약의 대상으로 된 귀속재산에 대하여만 신속한 종결을 도모하는 법적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불하계약의 대상으로 된 바 없던 범위의 귀속재산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잠시 뒤에 살펴보기로 하자.

2. 귀속재산과 한일청구권 협정

한편 귀속재산의 존재는 1965년 한일간에 청구권 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논란이 되었다. 일본은 미국의 한국내 일본인 재산의 귀속조치를 1907년 헤이그육전조규 제46조(점령군은 적지의 사유재산에 대하여는 침해할 수 없다는 내용) 위반을 주장하고

그에 따라 이를 반환할 것을 주장하였다.⁴¹⁾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주장을 차단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에서 한국내에서 미군정이 실시한 재산의 처리 등을 일본이 승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더 이상 귀속재산의 한국 소유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게 되었다. 다만 역시 제4조에서 미국은 이 부분에 대한 최종해결을 궁극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의 협정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한국과 일본의 1965년 청구권 협정에 따른 금액의 산정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고려가 된 셈이 되었다.

제5절 현재 귀속재산 처리의 현황

귀속재산의 처리는 ① 미군정 시기 농지/기업체 등 재산의 처분, ② 이승만 정부 시기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민간처분과 국유화, ③ 박정희 정부 시기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민간처분과 국유화 조치의 세 단계에 걸쳐 행하여졌다. 마지막 단계의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이 1964.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그 때까지 처리되지 않은 귀속재산을 모두 국유화함에 따라 법제도상으로는 귀속재산의 처리 문제는 완전히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원칙적 법제도와 달리 개별적인 법현실은 다소 그와 괴리가 있어서 적어도 ① 실질적으로 국가가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부분 즉, 부주의에 의한 탈루 내지 방치에 의하여 현재 관리되고 있지 않고 있는 귀속재산과 ⑤ 탈법/불법적인 방법으로 일실된 재산의 경우 진실한 소유자가 누구이냐에 관한 법적 다툼은 남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법문제가 현실적으로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률관계의 법제도적 규율의 공백의 문제는 아니고 법제도적 규율은 존재하지만 법현실에 이를 완전히 관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불과하다.

이를 알기 쉽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41) 박배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개인의 청구권”, 국제법평론, 통권 제14호, 2000, 20쪽.

<그림 1> 귀속재산의 구성

A	B	C	D	E
미군정 시기 처분한 재산	대한민국 정부가 이미 민간에 처분한 재산	대한민국 정부가 이미 국유화 조치한 재산	대한민국 정부가 귀속재산임을 인식하지 못하여 방치되고 있는 재산(=은닉재산)	탈법, 불법적인 방법으로 빠져나간 재산
 (= 사유재산으로 변경된 것 + 국유재산으로 관리된 것)			 (=국유재산이지만 현실적으로 국유재산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	
법률관계가 이미 종결된 부분			법률관계가 아직 종결되지 않은 부분	

즉 미군정시기와 이승만 정부 및 박정희 정부 시기(=미군정법령을 통하여 귀속재산을 형성한 때로부터 1964년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귀속재산의 민간불하 부분에 대한 종결을 도모하여 법적 처리가 종결된 때까지)를 거쳐 귀속재산 중 A, B, C 부분에 대한 법적 문제가 종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귀속재산의 형성 및 관리, 처분 과정에서 당시 미군정청 정책 결정의 초기 혼선과 시기적인 때늦음, 6.25 전쟁 등으로 인한 공부 멸실 상황 등이 겹쳐 의도적 고의 또는 비의도적 과실 등에 의하여 D, E 부분이 상당히 많이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D, E 부분이 박정희 정부 시기 이후 미처리된 상태로 남아 있는 귀속재산관리 문제라고 할 수 있다. D, E 부분은 법적 지위면에서는 국유재산임에 틀림이 없지만 현실적으로 국유재산으로서 관리되고 있지 못한 법적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D, E 부분의 경우 본래 있어야 할 자리인 국유재산으로 법적 지위를 확정해 주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 D, E 부분에 대하여 그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다. 다만 실제로 문제되는 D, E의 거의 대부분은 부동산일 것인데, 부동산의 경우는 2000년대 이후 전산화의 시행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보다 신속한 확인과 검색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D, E 부분의 법적 문제의 실질적 종결을 위한 작업이 착수될 수 있는 환경은 어느 정도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3장

귀속재산처리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 및 적용 사례

제1절 귀속재산처리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

제2절 귀속재산처리의 적용사례로서 관련 판례 검토

제3장

귀속재산처리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 및 적용 사례

제1절 귀속재산처리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

1. 「귀속재산처리법」의 주요 내용

(1) 연혁 및 주요 개정사항

「귀속재산처리법」은 1949년 제정⁴²⁾된 이후 총 9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54년 9월에 있었던 1차 개정에서는 대규모기업체 매각에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고, 최고가입찰가에게 매각하도록 했으며, 귀속재산매수자의 결정권자를 관재청장으로 하는 내용의 개정이 있었다.⁴³⁾ 1956년 12월에 있었던 2차 개정에서는 “북위 38도선이북 수복 지구 내에 있는 재산으로서 1945년 8월 9일 현재 일본인인 개인, 법인, 단체, 조합, 그 대행기관이나 정부의 조직 또는 통제한 단체가 직접·간접 혹은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 내지 관리하던 유형·무형의 일체의 재산은 이를 귀속재산으로 취급”하게 했으며, “귀속 재산의 가격감정 위촉을 받은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직접 감정하는 자는 그 귀속 재산을 감정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신분을 갖도록” 하였다.⁴⁴⁾ 또한 “임대료를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례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했으며, “귀속재산을 허가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재산을 점유 또는 사용한 기간 중 취득한 이익과 임대료에 상당한 금액을 손해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

42) 법률 제74호, 1949. 12. 19. 제정 · 시행.

43) 법률 제342호, 1954. 9. 23. 일부개정 · 시행.

44) 법률 제427호, 1956. 12. 31. 일부개정 · 시행

다.⁴⁵⁾ 1959년 12월에 있었던 3차 개정에서는 “귀속재산의 매수자가 지정기일 내에 매각 대금 또는 그 분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과태금을 징수하거나 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그 매각대금이나 분납금은 물론 과태금까지도 납부하지 않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소유 재산을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차압·공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⁴⁶⁾ 4차 개정은 1962년 7월에 있었는데, “정부의 사정가격이 10만원(서울특별시는 30만원)미만의 재산에 대하여는 연고자·종업원등 우선매수자의 순위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⁴⁷⁾ 1962년 12월 5차 개정에서는 “귀속주식의 매각을 정부소유주식의 매각방법에 준하도록”하는 규정이 신설⁴⁸⁾되었고, 1963년 12월에 있었던 6차 개정에서는 “지방관재국 및 동 출장소를 폐지하고 관재업무를 지방세무관서에 이관”하는 변경이 있었다.⁴⁹⁾ 제7차 개정에서는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매매계약에 의하여 1964년 6월 30일 내에 납부하여야 할 분납금을 1965년 3월 31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제21조의3이 신설되었다.⁵⁰⁾ 그러나 이 규정은 2000. 6.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헌법상의 적법절차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제9차 개정인 2005년 1월 개정에서 “다만, 정당한 사유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⁵¹⁾ 제8차 개정은 1966년 3월에 있었는데, “국세청의 신설에 따라 재무부장관 직속 하에 있던 귀속재산 소청심의회를 국세청 소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변경이 있었다.⁵²⁾

1966년 제8차 개정 이후, 2000년 「귀속재산처리법」 제21조의3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기 전까지, 「귀속재산처리법」은 30년 이상 주요 내용의 변경 없이 지속되고 있고, 위헌결

45) 앞과 동일.

46) 법률 제521호, 1959. 12. 18. 일부개정, 1960. 2. 17. 시행.

47) 법률 제1099호, 1962. 7. 14. 일부개정·시행.

48) 법률 제1204호, 1962. 12. 7. 일부개정·시행.

49) 법률 제1515호, 1963. 12. 14. 일부개정, 1963. 12. 7. 시행.

50) 법률 제1675호, 1964. 12. 31. 일부개정·시행.

51) 법률 제7346호, 2005. 1. 27. 일부개정·시행.

52) 법률 제1760호, 1966. 3. 8. 일부개정·시행.

정에 대한 대응 규정(제21조의3 단서)의 신설이 있었던 제9차 개정⁵³⁾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규정은 50년 이상 변경이 없는 상황이다. 상당수의 법령이 수시로 상황에 따라 수정·보완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귀속재산처리법」이 실제로 규범력을 갖고 현실에서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반문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현행 「귀속재산처리법」은 총 7장 46개(가지조문 포함)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귀속재산처리법」의 존치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장별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제1장 총 칙

총칙에서는 귀속재산처리법의 목적, 귀속재산의 정의, 귀속재산의 매각 대상자, 귀속재산의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1) 귀속재산처리법의 목적

「귀속재산처리법」은 1948년 9월 11일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된 재산을 유효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산업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⁵⁴⁾

2) 귀속재산의 정의

① 최초협정 제5조에 따라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

「귀속재산처리법」에서 말하는 “귀속재산”이란, 1948년(단기4281년) 9월 11일 「대한민국 정부 및 미국 정부 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Initial Financial and Property Settlement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

53) 법률 제7346호, 2005. 1. 27. 일부개정 · 시행.

54) 「귀속재산처리법」제1조 및 귀속재산처리법(법률 제74호, 1949. 12. 19. 제정 · 시행) 제 · 개정 이유 참고.

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하 “최초협정”이라 함)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⁵⁵⁾

최초협정 제5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정부는 재조선미군청정 법령 제33호(이하 “법령 제33호”라 함)에 의해 귀속된 전 일본인 공유 또는 사유재산에 대하여 재조선미군정청이 이미 행한 처분을 승인하고 비준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최초협정 제1조 및 제9조에 의하여 미국정부가 취득 또는 사용할 재산에 관한 보류 건을 제외하고는, 협정 당시까지 불하치 않은 귀속재산, 귀속재산의 임대차 및 불하에 의한 순수입금의 소비되지 않은 금액은 일절의 수취계정 및 매매계약과 함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한민국정부에 이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⁵⁶⁾

- i) 일절의 현금, 은행예금 또는 기타 유동재산은 최초협정의 유효기일부터 이양함
- ii) 기타 일절의 이양할 귀속재산, 일절의 입수가능한 재산목록, 도면, 증서 또는 기타 소유증은 대차대조표, 운영명세표 및 기타 귀속재산에 관한 재정기록에 의하여 확증되는 대로 질서 있는 이양이 가능한 한도에서 가급적 속히, 대한민국정부에 접차로 이양함. 대한민국정부는 한국국민의 복리를 위하여 ‘좌기재산’을 접수 및 관리할 별개의 정부기관을 설치하기로 협약함.

위에서 언급된 ‘좌기재산’이란 법령 제33호에 의하여 최초 협정 체결 당시까지 귀속되어, 최초 협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되는 재산 또는 이후에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될 재산을 지칭하는 말이다.⁵⁷⁾ 최초협정 제5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정부는 일본과 대전한 국가의 국민이 최초협정 제5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한국 내 전 일본인 재산에 존재하는 직접 또는 간접의 권리 및 이익을 존중, 보전 및 보호한다.⁵⁸⁾ 다만, 유사한 권리 및 이익은 법령 제33호의 유효기일 전에 선의로, 합법적인 취득을 한

55) 「귀속재산처리법」제2조

56) 이하, 최초협정 제5조의 내용임.

57) 위와 같음.

58) 위와 같음.

경우에만 보호한다고 하고 있다.⁵⁹⁾ 최초협정 제5조에 따라 대한민국정부는 동 협정 제5조에 언급한 재산의 귀속,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발생한, 일절의 현재 및 미래의 청구권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여 이후에 있을 일절의 책임을 미국으로부터 인수하며 미국은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⁶⁰⁾ 또한, 최초협정 제1조에서는 ‘좌기재산’에 대하여 미국이 보유하였던 일절의 권리 명의 및 이익을 대한민국정부에 이양한다고 하면서, ‘좌기재산’이라 함은, 지방세무서 부동산대장 및 도면 또는 법원 부동산등기부에 국유재산으로 기재된 재조선미군정청 및 남조선과도정부의 일절 재산, 해당재산에 가한 일절의 개량, 일절의 현금 및 은행 예금, 또는 현재까지 미국정부가 한국경제에 제공한 일절의 구조물자 및 재건물자를 포함하여, 남족선과도정부각부처 및 대행기관이 보유한 일절의 설비, 물자 및 기타 재산을 지칭한다고 하고 있다.⁶¹⁾

판례에 따르면 대한민국정부수립과 동시에 당연히 국유의 행정재산이 되는 것은 최초협정 제1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해방 전 조선총독부의 관할 하에 있던 일본국 소유재산만을 가리키며, 나머지 일본인 소유 재산은 귀속재산으로 편입된다.⁶²⁾

② 법령 제33호에 따라 귀속된 재산

법령 제33호는 1945. 12. 6. 발효되었는데, 조선 내 일본인 소유 재산권의 접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법령 제33호에 따라 1945. 8. 9. 이후 일본정부, 공공기관, 단체, 회사, 개인 등이 소유한 일체의 재산은 1945. 9. 25. 부로 미군정청이 접수하고 그 소유권을 행사하게 된다.⁶³⁾ 또한, 누구든지 미군정청의 허가 없이 이들 재산에 대한 진입·점유·이전·가치훼손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불법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⁶⁴⁾

59) 위와 같음.

60) 위와 같음.

61) 최초협정 제1조.

62) 대법원 1970. 1. 27. 선고 66다2323 판결; 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다1319 판결.

63) 법령 제33호 제2조.

64) 위와 같음.

군정청이 접수한 재산을 소유/관리/지배하는 보관자/관리자/관사/은행/신탁회사/개인/단체/조합 등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⁶⁵⁾

- i) 군정청의 지시에 따라서만 행동할 것
- ii) 해당 재산을 성실하게 보존/유지/수호, 재산가치 및 재산효용의 훼손금지
- iii) 정확한 기록과 회계장부의 유지
- iv) 군정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나 지시/인도/결산.서류 등을 제출할 것

③ 농경지 제외

농경지는 따로 농지개혁법에 따라 처리한다.⁶⁶⁾ 이 때의 농경지는 지목의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것과 시가지 계획에 의해 대지로 인정된 것 및 기업체 운영상 직접 필요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⁶⁷⁾

④ 북위 38도선 이북 수복지구내에 있는 재산

북위 38도선이북 수복지구내에 있는 재산으로서 1945년(단기 4278년) 8월 9일 현재 일본인인 개인, 법인, 단체, 조합, 그 대행기관이나 그 정부의 조직 또는 통제한 단체가 직접, 간접 혹은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한 일체의 재산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제1항에 규정하는 귀속재산으로 취급하여 「귀속재산처리법」을 적용한다.⁶⁸⁾ 이 내용은 1956. 12. 31. 일부개정을 통해 추가된 내용으로,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재산에 대한 관리가능한 북방한계선이 1950년 이전의 38도선에서 1953년 이후 휴전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강원도 지역에서 38도선 이북의 수복지구가 생겨났으므로 그 곳에 있는 일본국 및 일본인 관계의 재산 일체에 대해서도 귀속재산처리법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65) 법령 제33호 제3조.

66)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제1항 단서.

67)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조.

68)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제2항

⑤ 주식 또는 지분의 귀속

1945. 8. 9. 이전에 한국 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 기타에 대해서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⁶⁹⁾ 이 때, ‘조합기타’란 법령에 따라 조직된 것을 말한다.⁷⁰⁾

⑥ 이사행사권 또는 사원권

1945. 8. 9. 이전에 한국 내에서 설립되어 그 이사행사권 또는 사원권이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에 대해서는 그 이사행사권 또는 사원권도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⁷¹⁾

3) 귀속재산의 매각 대상자

귀속재산은 「귀속재산처리법」 및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재산, 국영 또는 공영 기업체로 지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게 매각한다.⁷²⁾

4) 귀속재산의 관리

귀속재산은 「귀속재산처리법」 제3조에 따라 지정 또는 매각될 때까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귀속재산처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가 이를 관리한다.⁷³⁾ 귀속재산 중 국영 또는 공영으로 지정된 후 해당 재산에 관한 법령이 실시될 때까지는 정부(그 재산에 대한 종전의 소관부 장관 또는 관재청장)가 이를 관리한다.⁷⁴⁾

69)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제3항

70)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2조.

71)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제4항

72) 「귀속재산처리법」 제3조

73)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제1항

74)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3) 제2장 국유와 공유

① 국유와 공유

귀속재산 중 (구)「대한민국헌법」 제85조⁷⁵⁾에 열거된 천연자원에 관한 권리 및 영림재산으로 필요한 임야, 역사적 가치 있는 토지, 건물, 기념품, 미술품, 문적 기타 공공성을 유하거나 영구히 보존함을 요하는 부동산과 동산은 국유 또는 공유로 한다.⁷⁶⁾ 정부, 공공단체에서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인된 교화, 후생기관에서 공익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과 동산에 대하여도 국유 또는 공유로 한다.⁷⁷⁾

상기한 공용 또는 공공용에 필요한 부동산, 동산은 관계 각부장관이 제의하여 국무회의의 의결로써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의 결재를 얻은 후 관재청장은 해당 재산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에게 이관한 후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은 이를 해당 기관에 이양하게 한다.⁷⁸⁾ 공인된 교화·후생기관에서 공익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과 동산은 교화·후생기관의 소관부장관이 제의하여 국무회의의 의결로써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의 결재를 얻어 관재청장은 그 재산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에게 이관한 후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은 이를 해당 교화·후생기관에게 사용하게 한다.⁷⁹⁾

75) (구)「대한민국헌법」(헌법 제1호, 1948. 7. 17. 제정 · 시행) 제85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국유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하거나 또는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현)「대한민국헌법」 제120조제1항.

76)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제1항

77)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제2항

78)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

79)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4조제2항

② 국영과 공영

귀속기업체 중 (구)「대한민국헌법」 제87조⁸⁰⁾에 열거된 기업체와 중요한 광산, 제철소, 기계공장 기타 공공성을 가진 기업체는 이를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⁸¹⁾ 국영 또는 공영으로 지시할 기업체는 해당 기업체의 소관부 장관과 기획처장이 제의하여 국무회의의 의결로써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의 결재를 얻어 국무원에서 고시한다.⁸²⁾

(4) 제3장 매각

1) 매각 귀속재산의 구분

① 기업체 매각

귀속재산 중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공용하는 부동산, 동산, 기타 제 권리 등 일체의 재산을 종합적 단일체로 평가하여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⁸³⁾ 다만, 기업체로서 존속할 가치가 없을 때 또는 기업체 운영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 재산을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다.⁸⁴⁾ 이 경우 기업체의 재산을 분할하여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부장관은 관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⁸⁵⁾ 관재청장은 기업체의 재산을 분할매각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관부장관에게 그 분할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⁸⁶⁾ 이 때 해산하여 그 재산을 분할 매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조합 기타는 그 법인 또는 조합 기타의 주식 또는 지분 중 3분의 2 이상이 귀속되어 있는 것에 한하여 관재청장이 그 재산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장관과의 합의를 얻어 이를 해산하여 분할 매각할

80) (구)「대한민국헌법」(헌법 제1호, 1948. 7. 17. 제정 · 시행) 제87조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사영을 특허하거나 또는 그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대외무역은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

81) 「귀속재산처리법」 제6조

82)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5조

83)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제1호 본문.

84)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제1호 단서.

85)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

86)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수 있다.⁸⁷⁾ 이 때 법인 또는 조합기타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관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법인 또는 조합 기타의 본사 및 지사 또는 사무소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⁸⁸⁾

② 부동산 매각

귀속재산 중 기업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주택, 점포, 대지 기타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⁸⁹⁾

③ 동산매각

귀속재산 중 기업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동산을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⁹⁰⁾

④ 주식 또는 지분매각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을 매각하는 것으로, 기업체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때에는 1945년 8월 9일 이전에 한국 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기타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조합기타를 해산하여 그 재산을 분할매각할 수 있다.⁹¹⁾ 이 경우 해산에는 상법상 해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⁹²⁾

2) 결격사유

다음에서 정하는 결격사유는 「귀속재산처리법」의 시행 전에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에게도 적용한다.⁹³⁾

87)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88)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7조

89)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제2호

90)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제3호

91)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제4호 제1문 및 제2문.

92)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제4호 제3문

93) 「귀속재산처리법」 제14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귀속재산의 매수인이 될 수 없다.⁹⁴⁾

- i) 금치산자 또는 준금치산자
- ii)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iii)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중 또는 집행유예 중인 자
- iv) 공민권을 박탈당한 자
- v) 귀속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불법처분, 고의파괴 또는 고의훼손, 허위보고 등 사실이 있는 자와 그 가족.

귀속재산 매수에 관한 결격사실이 있는 경우는 결격의 원인이 된 행위로서 귀속재산을 권리금을 받고 권리를 양도하거나 허가없이 전대하는 행위 또는 귀속재산에 손해를 주었거나 귀속재산관리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권한있는 관청의 판정 또는 처분 기타에 의하여 그 사실이 증명된 자를 말한다.⁹⁵⁾ 이 경우 결격사항은 해당 재산의 매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발견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결격사유를 주장하지 못한다.⁹⁶⁾

- vi) 귀속재산의 매수 또는 대차, 관리에 관하여 「귀속재산처리법」 제21조, 제22조 또는 제36조에 해당함으로써 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를 당한 사실이 있는 자
- vii) 기타 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자

② 동일 가족에 속하는 자 중 어느 한 사람이 귀속재산의 기업체 또는 주택 및 대지 이외의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그 가족에 속하는 자는 이를 다시 매수할 수 없다.⁹⁷⁾ 다만, 기업체 운영상 불가피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체 경영자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⁹⁸⁾

③ 동일 가족에 속하는 자 중 어느 한 사람이 귀속재산의 주택 또는 대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그 가족에 속하는 자는 이를 다시 매수할 수 없다.⁹⁹⁾ 대지의 매각은 매수자 1인

94)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95)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96)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97)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본문

98)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단서

99) 「귀속재산처리법」 제11조제1항

에 대하여 2백평 이하로 한다.¹⁰⁰⁾ 다만, 개인주택용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¹⁰¹⁾

④ 동일 가족에 속하는 자 중 어느 한 사람이 매수할 귀속주택 또는 대지를 중심으로 20킬로미터 이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 속하는 자는 귀속주택 또는 대지를 매수할 수 없다.¹⁰²⁾ 이 때, 귀속주택 또는 대지를 중심으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라 함은 그 귀속주택 또는 대지를 중심으로 하여 지도상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¹⁰³⁾ 1945년 8월 9일 이후 위의 주택을 1년 이상 겸유 또는 겸점한 사실이 있는 자도 또한 같다.¹⁰⁴⁾

⑤ 「귀속재산처리법」에 있어서 동일가족에 속함으로써 임차, 관리, 매수를 금지당한 사항은 동족회사를 조직한 때에도 또한 같다.¹⁰⁵⁾ ‘동족회사’라 함은 주주 또는 사원의 일원이나 주주 또는 사원의 일원과 그 가족의 주식 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가 그 법인의 주식 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¹⁰⁶⁾ 귀속재산의 임차, 관리, 매각을 받음에 따라 2개 이상의 기업체가 동족회사가 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¹⁰⁷⁾

3) 우선 매각

① 귀속재산은 합법적이며 사상이 온건하고 운영능력이 있는 선량한 연고자, 종업원 또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와 주택에 있어서는 특히 국가에 유공한 무주택자, 그 유가족, 주택 없는 빈곤한 근로자 또는 귀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구득하기 곤란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한다.¹⁰⁸⁾ 이 때 기업체 이외의 부동산을 공동으로 임차

100) 「귀속재산처리법」 제11조제2항 본문

101) 「귀속재산처리법」 제11조제2항 단서

102)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제1항

103)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8조

104)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제2항

105) 「귀속재산처리법」 제13조제1항

106) 「귀속재산처리법」 제13조제2항

107) 「귀속재산처리법」 제13조제3항

108)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제1항

또는 관리하는 자는 동등한 우선권을 가지며¹⁰⁹⁾, 일동의 건물에 관하여 수인의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수인의 임차인에게 공동으로 매각하여야 한다.¹¹⁰⁾ 여기에서 임차인이라 함은 임대차계약을 하고 그 재산을 현실적으로 계약자 자신이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¹¹¹⁾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자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 i) 기업체, 주식 및 지분에 있어서는 임차인 및 관리인, 해당 기업체의 주주, 사원, 조합원 및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종업원,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의 순위로 한다.¹¹²⁾ 단, 주주, 사원은 1945년 8월 9일 이전부터 해당 기업체의 주주, 사원, 조합원이어야 한다.¹¹³⁾
- ii) 주택에 있어서는 임차인, 국가에 유공한 무주택자 및 그 유가족, 주택 없는 빈곤한 근로자, 귀속 주택 이외의 주택을 구하기 곤란한 자의 순위로 한다.¹¹⁴⁾
- iii) 점포, 창고, 공대지 기타 주택 이외의 부동산에 있어서는 임차인, 관리인의 순위로 한다.¹¹⁵⁾ 이 때 점포라 함은 1945년 8월 9일 이전에 상호등기를 하였거나 영업허가를 얻었거나 해당 건물의 2분의 1 이상을 상용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¹¹⁶⁾
- iv) 동산에 있어서는 그 연고자로 한다.¹¹⁷⁾

② 공인된 교회, 후생 기타 공익에 관한 사단 또는 재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필요로 하는 귀속재산에 대하여도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¹¹⁸⁾

109)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110)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111)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0조제5항

112)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본문

113)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단서

114)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115)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

116)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117)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4호

118)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제2항

③ 위의 ① 및 ②에서 정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귀속재산 중 다음에 해당하는 대규모 기업체는 최고가격 입찰자에게 매각한다.¹¹⁹⁾

- i) 우선매수 자격자와 귀속재산의 일반 원매자는 관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산의 원매가격을 입찰하여야 한다.¹²⁰⁾
- ii) 개찰은 관재위원회위원, 언론계인 등의 입회 하에 공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최고액 입찰자가 우선매수자격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입찰의 최고가격으로서 ①에 규정된 우선 매수 자격자의 순위로 매각한다.¹²¹⁾ 다만, 해당 입찰의 최고가격이 정부 사정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정부 사정가격으로 매각한다.¹²²⁾ 이 때 정부사정가격은 매각 당시의 시가로서 적어도 둘 이상의 금융기관의 감정에 의하여 관재위원회의 심사결의를 거쳐서 관재청장이 이를 결정한다.¹²³⁾
- iii) ii)의 규정에 따라 매각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최고액입찰자에게 매각한다.¹²⁴⁾ 다만, 해당 최고액입찰자가 법에서 정한 결격자인 경우 또는 계약에 불응할 경우에는 제2 또는 제3의 고액입찰자에 한하여 해당 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¹²⁵⁾ 이 경우에 있어서도 그 매각가격은 최고액입찰가격이어야 한다.¹²⁶⁾
- iv) ii)의 규정으로 인하여 해당 최고입찰자가 매수인이 되지 못하고, 우선권자가 매수 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었을 때에는 해당 최고입찰자에게 매각한다.¹²⁷⁾

119)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제3항

120)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9조제1호

121)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9조제2호 본문

122)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9조제2호 단서

123)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9조제2호 3문

124)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9조제3호 본문

125)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9조제3호 단서

126)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9조제3호 3문

127)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9조제4호

4) 일반 또는 지명공매

우선매각이 불능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반 또는 지명 공매에 부쳐서 최고입찰자에게 매각한다.¹²⁸⁾ 정부는 입찰가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각을 거부하고 재입찰에 부한다.¹²⁹⁾ 동일 재산에 대한 입찰이 2차에도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적정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다.¹³⁰⁾ 다만, 이 경우의 적정가격은 거부한 최고입찰가격보다 고가이어야 한다.¹³¹⁾ 이상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정부사정가격 10만원(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30만원) 미만의 재산에 대하여는 우선매수자의 순위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¹³²⁾

5) 매수자의 결정

귀속재산의 매수자의 결정은 국세청장이 행한다.¹³³⁾

귀속재산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재산의 입찰 전일까지 관재청장에게 귀속재산 우선 매수원을 계출하여야 한다.¹³⁴⁾ 우선매각 규정에 따라 매수자로 선정된 자는 3주일 이내에 관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¹³⁵⁾ 위의 경우 우선매수원을 계출하지 아니하거나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¹³⁶⁾

128) 「귀속재산처리법」 제16조제1항

129) 「귀속재산처리법」 제16조제2항

130) 「귀속재산처리법」 제16조제3항 본문.

131) 「귀속재산처리법」 제16조제3항 단서

132) 「귀속재산처리법」 제16조제4항

133) 「귀속재산처리법」 제17조. 매수자 선정은 법률 제74호에서는 관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재산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장관이, 법률 제342호에서는 관재청장이, 법률 제427호에서는 재무부장관이 행하도록 하다가, 법률 1760호 이후로 국세청장이 하도록 하고 있다.

134)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135)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136)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관재청장은 매각할 재산의 입찰일시와 장소, 입찰방법 및 대금지불방법에 관하여 개찰 2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¹³⁷⁾ 이 때 매각할 재산에는 계쟁 중에 속하는 재산도 포함하지만, 소송에 계속 중인 재산은 예외로 한다.¹³⁸⁾ 매각할 재산의 매각 순서는 관재위원회의 심사결의를 거쳐 관재청장이 정한다.¹³⁹⁾

해당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관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증금을 전액하여 야 한다.¹⁴⁰⁾ 보증금은 낙찰자로서 법에 의하여 결격된 자의 매수계약에 불응한 자에 대해서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¹⁴¹⁾

6) 매각 가격 및 대금 납부 등

① 귀속재산의 매각가격은 그 재산의 매각계약 당시의 시가를 저하하지 못한다.¹⁴²⁾ 이 때의 시가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참작가감하여 결정하여야 한다.¹⁴³⁾

- i) 이미 납부한 보증금 또는 매각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 ii) 그 재산의 가치를 증가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
- iii) 그 재산의 관리운영기간 중 취득한 이익과 임대료에 해당한 금액의 납부
- iv) 매수자 귀책사유로 인한 재산의 피해에 대한 배상

귀속재산의 가격감정의 위촉을 받은 금융기관의 직원은 그 업무수행상의 행위에 대하여 공무원에 준하여 별하고, 해당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준하여 처벌한다.¹⁴⁴⁾

137)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138)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139)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140)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141)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142) 「귀속재산처리법」 제18조제1항

143) 「귀속재산처리법」 제18조제2항

144) 「귀속재산처리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

② 매각대금의 일시전액현금납부, 분납방법, 분납기한, 제1회 분납금액 등은 기업체, 부동산, 주식 또는 지분 등으로 구별한 일반규정으로 정하며, 일반규정은 관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재청장이 정한다.¹⁴⁵⁾

귀속재산의 매각대금은 일시 전액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동산매각 이외의 재산매각에 있어서 최고 15년의 기한으로 분할하여 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¹⁴⁶⁾ 매각대금을 분납할 경우에는 그 제1기분 납금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¹⁴⁷⁾ 매각대금납부기간 중 일반물가의 변동이 현저할 때에는 그 때 이후의 납부금액은 법률로써 변경할 수 있다.¹⁴⁸⁾ 귀속재산의 매각대금은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¹⁴⁹⁾

귀속재산에 설정된 담보권부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대금 한도내에서 담보권의 원인된 채무를 반제한다.¹⁵⁰⁾

③ 귀속재산의 매수자가 지정기일 내에 매각대금 또는 그 분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미납금의 일할에 해당한 금액의 과태금을 징수한다.¹⁵¹⁾ 과태금은 기납금 중에서 충당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¹⁵²⁾ 귀속재산의 매각대금이나 분납금 또는 과태금의 징수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¹⁵³⁾

④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매매계약에 의하여 1964년 6월 30일 내에 납부하여야 할 분납금을 1965년 3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해제된다.¹⁵⁴⁾ 다만, 정당한 사유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¹⁵⁵⁾

145)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4조

146) 「귀속재산처리법」 제19조제1항

147) 「귀속재산처리법」 제19조제2항

148) 「귀속재산처리법」 제19조제3항

149) 「귀속재산처리법」 제19조제4항

150) 「귀속재산처리법」 제20조

151)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152)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153) 「귀속재산처리법」 제21조의2

154) 「귀속재산처리법」 제21조의3 본문

155) 「귀속재산처리법」 제21조의3 단서. 단서의 내용은 2005. 1. 27. 개정을 통해 규정된 것으로, 동조 본문이 법률

⑤ 귀속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계약 당시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대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또는 4년 이내에 매각대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한 납부금잔액에 상당한 저당권 설정에 의하여 귀속재산의 소유권을 매수자에게 이전시킬 수 있다.¹⁵⁶⁾ 귀속재산의 매수자는 그 재산의 소유권이 이동될 때까지 「귀속재산 처리법」 제4장에 규정하는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¹⁵⁷⁾ 해당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¹⁵⁸⁾

⑥ 계약의 해제를 당하거나 또는 전업, 이주 기타로 인하여 그 계약을 포기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정상에 의하여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¹⁵⁹⁾

- i) 이미 납부한 보증금 또는 매각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 ii) 그 재산의 가치를 증가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
- iii) 그 재산의 관리운영기간 중 취득한 이익과 임대료에 해당한 금액의 납부
- iv) 매수자 귀책사유로 인한 재산의 피해에 대한 배상
- v) iv)의 경우 납부 또는 배상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¹⁶⁰⁾ 귀속재산 매각대금 납부원칙에 관한 사항은 여기에도 적용할 수 있다.

(5) 제4장 관 리

1) 귀속재산의 임대 또는 관리

① 국가관리 귀속재산의 임대 · 관리

지정 또는 매각될 때까지 정부가 관리하는 귀속재산, 국영 또는 공영으로 지정된 후 해당 재산에 대한 법령이 실시되기 전까지 정부가 관리하는 귀속재산의 경우에는 대한민

제1675호(1964. 12. 31.)로 신설되면서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가 납부하여야 할 분납금을 ‘정당한 사유’로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는 부분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나면서 신설된 것이다.

156)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제1항

157)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제2항

158)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제3항

159) 「귀속재산처리법」 제23조제1항

160) 「귀속재산처리법」 제23조제2항

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¹⁶¹⁾ 귀속재산의 우선매각 대상에 관한 규정은 임대의 경우에도 준용된다.¹⁶²⁾

각부장관 및 관재청장은 귀속재산을 국유, 공유, 국영 또는 공영으로 지정하거나 임대, 매각 또는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귀속재산 소재지 또는 사무소에 임검하여 서류, 장부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¹⁶³⁾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한다.¹⁶⁴⁾

귀속재산 매각가격의 결정 및 매각대금 납부,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 미납으로 인한 과태금 징수, 계약해제 등의 사항은 국가가 관리하는 귀속재산의 임대료에 준용할 수 있다.¹⁶⁵⁾

정부는 임대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귀속재산에 대해서는 관리인을 선정하여 관리한다.¹⁶⁶⁾

정부는 매각이 불가능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전의 선량한 임차인 또는 점유자에게 계속하여 임대한다.¹⁶⁷⁾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시행 전에 외국인에게 임대한 귀속재산은 선량한 외국인에 한하여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계속하여 임대한다.¹⁶⁸⁾

②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귀속재산의 임대차를 받거나 관리인이 될 수 없다.¹⁶⁹⁾ 「귀속재산처리법」의 시행 전에 귀속재산의 임대 또는 관리를 받은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¹⁷⁰⁾

161) 「귀속재산처리법」 제24조제1항

162) 「귀속재산처리법」 제27조

163)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164)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165) 「귀속재산처리법」 제24조제2항

166) 「귀속재산처리법」 제25조

167)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30조

168)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31조

169) 「귀속재산처리법」 제26조

170) 「귀속재산처리법」 제28조

- i) 금치산자 또는 준금치산자
- ii)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iii)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중 또는 집행유예 중인 자
- iv) 공민권을 박탈당한 자
- v) 귀속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불법처분, 고의파괴 또는 고의훼손, 허위보고 등 사실이 있는 자와 그 가족
- vi) 귀속재산의 매수 또는 대차, 관리에 관하여 「귀속재산처리법」 제21조, 제22조 또는 제36조에 해당함으로써 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를 당한 사실이 있는 자
- vii) 기타 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자

동일 가족에 속하는 자 중 어느 한 사람이 귀속재산의 기업체 또는 주택 및 대지 이외의 부동산을 임차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 속하는 자는 이를 다시 임차 또는 관리할 수 없다.¹⁷¹⁾ 다만, 기업체 운영상 불가피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체 경영자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¹⁷²⁾ 「귀속재산처리법」의 시행 전에 귀속재산의 임대 또는 관리를 받은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¹⁷³⁾

동일 가족에 속하는 자 중 어느 한 사람이 귀속재산의 주택 또는 대지를 임차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 속하는 자는 이를 다시 임차 또는 관리할 수 없다.¹⁷⁴⁾ 「귀속재산처리법」의 시행 전에 귀속재산의 임대 또는 관리를 받은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¹⁷⁵⁾

동일 가족에 속하는 자 중 어느 한 사람이 임차할 귀속주택 또는 대지를 중심으로 20킬로미터 이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 속하는 자는 귀속주택 또는 대지를 임차 또는 관리할 수 없다.¹⁷⁶⁾ 이 때, 귀속주택 또는 대지를 중심으로 20킬로미터

171) 「귀속재산처리법」 제27조 및 제10조 본문

172) 「귀속재산처리법」 제27조 및 제10조 단서

173) 「귀속재산처리법」 제28조

174) 「귀속재산처리법」 제27조 및 제11조제1항

175) 「귀속재산처리법」 제28조

176) 「귀속재산처리법」 제27조 및 제12조제1항

이내의 지역이라 함은 그 귀속주택 또는 대지를 중심으로 하여 지도상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¹⁷⁷⁾ 1945년 8월 9일 이후 위의 주택을 1년 이상 겸유 또는 겸점한 사실이 있는 자도 또한 같다.¹⁷⁸⁾ 「귀속재산처리법」의 시행 전에 귀속재산의 임대 또는 관리를 받은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¹⁷⁹⁾

③ 귀속기업체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의 선정

중요한 귀속기업체에 대해서는 9인 이내의 공동관리인을 선정하여 이사제를 실시할 수 있다.¹⁸⁰⁾ 각부장관은 공동관리인을 선정하여 이사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이사 중 1인을 이사장, 약간인을 상무이사로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이사 중에서 부이사장을 둘 수 있다.¹⁸¹⁾ 각부장관이 이사장 및 상무이사 또는 부이사장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관재청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¹⁸²⁾ 이사장은 기업체의 업무를 통괄하고 기업체를 대표하며 상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담당업무를 처리한다.¹⁸³⁾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¹⁸⁴⁾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이사회는 매월 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한다.¹⁸⁵⁾ 이사장은 이사회의 규정을 제정하여 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¹⁸⁶⁾ 이사장은 기록을 조제하여 지체없이 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¹⁸⁷⁾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¹⁸⁸⁾

177) 「귀속재산처리법」 제27조 및 제12조제1항,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8조

178) 「귀속재산처리법」 제27조 및 제12조제2항

179) 「귀속재산처리법」 제28조

180) 「귀속재산처리법」 제30조

181)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제2항

182)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183)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32조제4항

184)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32조제5항

185)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186)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187)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188)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34조

- i)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ii) 소송에 관한 사항
- iii) 사업계획서, 사업실천보고서, 수지예산서, 결산보고서 및 기타 중요한 승인 또는 보고사항
- iv) 주임급 이상의 임면에 관한 사항
- v) 기타 주요한 사항

각부장관은 이사제를 실시하는 기업체에는 필요에 따라 이사 이외의 3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¹⁸⁹⁾ 각부장관이 감사를 임명하였을 때에는 관재청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¹⁹⁰⁾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i) 기업체의 재산 감사
- ii) 이사의 업무집행의 감사
- iii)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의 진술
- iv) 각부장관에 대한 1년 4회의 정기 감사보고서 및 돌발사건에 관한 임시 감사보고서 제출

귀속기업체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합의하여 그 기업체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장관이 임면한다.¹⁹¹⁾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의 임차 또는 관리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¹⁹²⁾ 각부장관은 임차인 또는 관리인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관재청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¹⁹³⁾ 기업체, 주식 및 지분 이외의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의 선정은 관재청장이 심사 결정한 후 각부장관에게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¹⁹⁴⁾ 임명된 관리인은 매년 2기로 분하여 기별실천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또 매3월마다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

189)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190)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191) 「귀속재산처리법」 제31조제1항

192) 「귀속재산처리법」 제31조제2항

193)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36조

194)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37조

서를 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¹⁹⁵⁾ 각부 장관은 해당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관재 청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¹⁹⁶⁾

관재청장은 귀속사업체의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¹⁹⁷⁾ 각 부 장관은 귀속사업체의 회계 감사가 필요할 때에는 관재청장에게 이를 의뢰할 수 있다.¹⁹⁸⁾

2) 귀속재산 관리인의 권리 · 준수사항

① 권리 등

귀속재산의 관리인은 상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¹⁹⁹⁾

정부는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에 속한 주주 또는 사원 기타 지분권자로서의 권리 또는 권한의 전부나 일부를 그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케 할 수 있다.²⁰⁰⁾ 귀속된 이사행사권 또는 사원권의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²⁰¹⁾

② 준수사항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²⁰²⁾

- i) 국가산업의 부흥과 국민복지를 위하여 그 재산의 최대의 가치를 발휘하도록 운영 할 것
- ii) 정부의 지시 하에 그 재산을 보존하며 정부의 승인없이 그 재산의 이동, 전대 또는 처분을 하지 않을 것

195)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196)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197)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198)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199) 「귀속재산처리법」 제32조

200) 「귀속재산처리법」 제33조제1항

201) 「귀속재산처리법」 제33조제2항

202)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 iii)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존하며 그 재산의 가치 또는 효용을 감소시키지 아니할 것
- iv) 정확한 기록과 회계장부를 비치할 것

임명된 관리인은 매년 2기로 분하여 기별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기초 2월 전에 각 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²⁰³⁾ 관리인이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변경할 때에는 즉시로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각 부장관이 승인할 때에는 관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²⁰⁴⁾

임명된 귀속재산관리인 및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 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에서 기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승인 및 변경 승인을 받은 사항은 제외한다.²⁰⁵⁾

- i) 토지, 건물, 기계설비의 구입, 이전, 전대, 양도 또는 수리
- ii) 원료의 처분
- iii) 기부금, 교제비 또는 상여금의 지출
- iv) 자금의 차입
- v) 사무의 변경

3) 임대차 또는 관리계약의 취소, 귀속재산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 또는 관리계약을 취소하며 그 귀속재산을 반환을 명할 수 있다.²⁰⁶⁾

- i) 「귀속재산처리법」에 규정하는 결격조건에 해당하게 될 때
- ii) 「귀속재산처리법」에 규정하는 임차인 또는 관리인의 의무에 위반하였을 때
- iii) 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정부의 지시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203)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204)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및 제3항

205)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39조

206)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계약을 취소당하거나 귀속재산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정상에 의하여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²⁰⁷⁾

- i) 이미 납부한 보증금 또는 매각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 ii) 그 재산의 가치를 증가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
- iii) 그 재산의 관리운영기간 중 취득한 이익과 임대료에 해당한 금액의 납부
- iv) 임대인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재산의 피해에 대한 배상

위의 경우 귀속재산의 반환의 명을 받은 자가 그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재청장은 각부장관의 회의를 얻어 그 재산의 명도 또는 인도를 경찰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²⁰⁸⁾

관재청장은 매각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 또는 해제한 때와 매각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포기한 자가 있을 때에는 각부장관에게 통고하여야 한다.²⁰⁹⁾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해제는 관재위원회의 심사결의를 거쳐야 한다.²¹⁰⁾

4) 무단 점·사용에 대한 제재

귀속재산을 허가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재산을 점유 또는 사용한 기간 중 취득한 이득 또는 임대료에 상당한 금액을 손해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²¹¹⁾ 손해금을 소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²¹²⁾

(6) 제5장 관재업무관장기관

「귀속재산처리법」에 규정하는 귀속재산에 관한 사무는 지방세무관서가 관장한다.²¹³⁾

207) 「귀속재산처리법」 제36조 및 제23조

208)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44조

209)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210)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211) 「귀속재산처리법」 제36조의2제1항

212) 「귀속재산처리법」 제36조의2제2항

213) 「귀속재산처리법」 제37조

국세청에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소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귀속재산소청심의회를 둔다.²¹⁴⁾

각 부 장관 및 관재청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 각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나 각 도의 관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²¹⁵⁾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²¹⁶⁾

(7) 제6장 별 칙

불법으로 귀속재산을 취득, 처분, 멸실, 파괴, 훼손 또는 은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²¹⁷⁾ 다만, 그 재산의 가격이 30만환을 초과할 경우의 벌금은 그 가격과 동액으로 한다.²¹⁸⁾

고의로 귀속재산의 임차, 관리 또는 매각에 관하여 허위보고 또는 허위진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²¹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만원 이상 8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²²⁰⁾

- i) 이사장이 이사회의 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후 각 부 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
- ii) 임명된 관리인이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제출 및 변경제출시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
- iii) 임명된 관리인이 사전승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214)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제1항

215)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46조

216)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217) 「귀속재산처리법」 제40조 본문.

218) 「귀속재산처리법」 제40조 단서.

219) 「귀속재산처리법」 제41조

220)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57조

보고서,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는 2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²²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²²²⁾

- i) 해당 공무원의 감사, 임검, 조사 또는 질문을 기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 ii) 귀속재산의 반환을 명받았으나 귀속재산의 반환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귀속재산처리 관련 특별법의 주요 내용

(1)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제 · 개정 및 주요 내용

1) 제정이유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은 「귀속재산처리법」으로는 그 처리가 불가능한 귀속재산에 대하여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이를 신속 ·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²²³⁾ 초기 제정법은 법률 제1346호로 1963. 5. 29. 제정 · 시행되었다.

2) 주요 내용

① 귀속휴면법인의 재산매각

“귀속휴면법인”이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제3항에 규정된 영리법인, 조합 기타 단체 중 그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 귀속된 것으로서 1945년 8월 9일 이후 그 가능이

221)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58조

222)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59조

223)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346호) 제정 이유 참고.

상실되어 재무부장관 또는 지방관재국장이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인정하는 영리법인·조합기타, 단체를 말한다.²²⁴⁾

재무부장관 또는 지방관재국장은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을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청산인이 되어 직접 매각하며, 매각에 관하여는 「귀속재산처리법」을 준용한다.²²⁵⁾ 재무부장관 또는 지방관재국장은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을 매각하려고 할 때에는 그 매각 30일 전에 그 법인을 해산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산등기에 관한 규정 이외에는 상법 중 해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²²⁶⁾ 재무부장관 또는 지방관재국장은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한도로 하여 이를 청산한다.²²⁷⁾

※ 관련하여, 법률 제1527호(1963. 12. 16. 개정 · 시행)에서는 일부개정을 통해,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한 특례를 규정한 바 있다.²²⁸⁾ 즉,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 재무부장관 또는 지방관재국장이 직접 해당 법인의 청산인이 되어 매각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 i)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주주총회, 합명회사나 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사원총회, 조합기타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총회의 의결을 얻어 그 귀속휴면법인을 해산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사원총회 또는 구성원총회는 총사원 또는 총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도록 규정하였다.²²⁹⁾
- ii) 위의 사원총회 또는 구성원총회는 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이 이를 소집하도록 하였다.²³⁰⁾

224)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346호) 제2조제2호.

225)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346호) 제3조제1항 및 제2항

226)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346호) 제3조제3항

227)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346호) 제3조제4항

228)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527호) 개정이유 참고.

229)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527호) 제3조제1항

230)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527호) 제3조제2항

- iii) 위의 경우 귀속휴면법인이 해산된 때에는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도록 하였고, 이 경우 사원총회 또는 구성원총회는 총사원 또는 총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도록 규정하였다.²³¹⁾
- iv) 해산된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처리에 관하여는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및 「귀속재산처리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²³²⁾

② 귀속휴면법인의 청산종결등기

재무부장관 또는 지방관재국장은 귀속휴면법인의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를 하여야 한다.²³³⁾ 이 경우 등기의 측탁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도 불구하고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외에는 부속서류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²³⁴⁾

- i) 법인의 명칭 또는 상호
- ii)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iii) 등기의 목적 또는 사유
- iv) 등기의 연월일

본점 이외의 지점 또는 기타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도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청산종결등기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그 등기를 측탁하여야 한다.²³⁵⁾

③ 미수복지구내에 본점을 둔 법인재산의 처리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이 있는 영리법인 또는 조합 기타 단체로서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미수복지구내에 소재하고 그 재산이 미수복지구이남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 또는 지방관재국장이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불구하고 귀속재산처리법을

231)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527호) 제3조제2항 및 제3항

232)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527호) 제3조제4항

233)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346호) 제4조제1항

234)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346호) 제4조제2항

235)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346호) 제4조제3항

준용하여 그 재산을 처리한다.²³⁶⁾ 이 경우에는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 또는 조합 기타 단체의 해산을 요하지 아니한다.²³⁷⁾

④ 매매계약의 해제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가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전에 그 대금을 체납한 경우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해제한다.²³⁸⁾

- i) 3년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3월
- ii) 2년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4월
- iii) 1년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5월

체납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 1년마다 1회식 그 대금을 분납하기로 한 경우에 해당 연도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²³⁹⁾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전에 재무부장관 또는 지방관재국장이 체납금 유예조치를 한 것으로서 그 유예기간이 위의 각 호에 해당하는 납부기간 이후에 만료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유예기간까지를 체납금납부기간으로 한다.²⁴⁰⁾

※ 관련하여, 법률 제1455호(1963. 11.30. 개정 · 시행)에서는 일부개정을 통해, 이 규정에 따를 경우, 귀속재산매각대금의 체납자가 납부유예기간 내에 체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해당 매각계약을 해제하게 되어 있어, 그 납부유예기간이 너무 단기간이므로 이를 연장함으로써 체납정리의 실효를 기하고자 하였다.²⁴¹⁾

236)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346호) 제5조제1문

237)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346호) 제5조제2문

238)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346호) 제6조제1항

239)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346호) 제6조제2항

240)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346호) 제6조제3항

241)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455호, 1963. 11. 30. 개정 · 시행) 개정이유 참고.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i)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전에 체납한 경우 같은 법 시행일부터 각 호의 기간 내에 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아할 때 그 기간의 만료일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던 것에서,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가 1963년 11월 20일 전에 그 대금을 체납한 경우 1964년 3월 31일까지 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해당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²⁴²⁾
- ii) 체납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 1년마다 1회식 그 대금을 분납하기로 한 경우에 해당 연도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하던 규정을 삭제하였다.²⁴³⁾

⑤ 임대차계약의 해제

귀속재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전에 그 임대료를 3월분 상당액 이상 체납한 경우에 있어서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해당 재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해제한다.²⁴⁴⁾ 그러나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전에 재무부장관 또는 지방관재국장이 체납금유예조치를 한 것으로서 그 유예기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납부기간 이후에 만료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유예기간까지를 체납금 납부기간으로 한다.²⁴⁵⁾

- i) 3년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3월
- ii) 2년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4월
- iii) 1년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5월

242)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455호, 1963. 11. 30. 개정 · 시행) 제6조제1항

243)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455호, 1963. 11. 30. 개정 · 시행) 제6조제2항 삭제 후 제3항으로 제2항으로 개정

244)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346호) 제7조전단

245)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346호) 제7조후단

⑥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후의 체납에 대한 계약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귀속재산의 매각대금의 분납금 또는 임대료를 체납한 때에는 그 납기도록 후 3월이 경과한 날에 그 계약을 해제한다.²⁴⁶⁾

- i)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전에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그 매각대금의 분납금 또는 임대료의 납기가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후에 도래하는 경우
- ii)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후에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이와 관련해서도, 법률 제1455호(1963. 11.30. 개정 · 시행)에서는 일부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 i)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규정하던 것에서, 1963년 11월 20일을 기준으로 변경하였다.²⁴⁷⁾
- ii) 분납금 또는 임대료를 체납한 때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던 것에서, 그 납기도록 후 분납금의 경우에는 6월, 임대료의 경우에는 3월이 경과한 후에 그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기간을 연장하였다.²⁴⁸⁾

⑦ 계약의 복구

위에서 기술한 매각대금 또는 임대료 체납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귀속재산과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전에 계약이 해제된 귀속재산에 대하여는 이를 공매처분한다.²⁴⁹⁾ 이 때 공매처분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공매입찰 전일까지에 해당 재산에 대한 계약을 해제당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계약을 복구한다.²⁵⁰⁾

246)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346호) 제8조

247)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455호, 1963. 11. 30. 개정 · 시행) 제8조

248)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455호, 1963. 11. 30. 개정 · 시행) 제8조

249)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346호) 제9조제1항

250)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346호) 제9조제2항

- i) 매매계약을 하제당한 자가 그 재산의 공매예정가격에서 종전의 매각대금에 대한 기납부금액을 공제한 차액 전부를 납부한 때
- ii) 임대차계약을 해제당한 자가 그 계약해제 당시의 체납임대료와 계약해제일부터 계약복구일까지의 임대료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한 때

위에서 기술한 매각대금 또는 임대료 체납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자 또는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전에 계약이 해제된 자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해당 재산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도 계약복구와 관련한 위의 내용을 준용한다.²⁵¹⁾ 이 경우에 있어서 그 양수인을 매수인 또는 임차인으로 한다.²⁵²⁾ 다만, 양수인이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²⁵³⁾

※ 관련하여, 법률 제1649호(1964. 7. 8. 개정, 1964. 4. 1. 시행)에서는 일부개정을 통해, 이 법의 빈번한 개정으로 영세민에 속하는 계약자들이 부지 중 귀속재산처리시한을 경과하게 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아, 일정기간 내에 체납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 이들을 구제하고자 하였다.²⁵⁴⁾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신설되었다.

- i) 대금체납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자의 경우, 그 계약을 해제당한 자가 1964년 7월 31일 내에 계약해제 당시의 체납액과 1963년 11월 21일부터 계약복구일까지의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할 분납금 및 과태금을 납부한 때에 그 계약은 복구한 것으로 보고, 계약이 복구되지 아니한 재산은 이를 공매처분하도록 하였다.²⁵⁵⁾
- ii) 1964년 11월 20일 후의 체납에 따른 계약해제를 당한 자에 대해서도 i)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²⁵⁶⁾

251)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346호) 제9조제3항제1문

252)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346호) 제9조제3항제2문

253)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346호) 제9조제3항 단서

254)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49호) 개정이유 참고.

255)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49호) 제9조제4항 신설.

256)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49호) 제9조제5항 신설.

⑧ 계약해제재산의 사용료 등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계약복구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매매계약체결 당시의 고정자산 평가사정액의 연 1할 상당액을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그 계약을 해제한 날까지 합계한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²⁵⁷⁾ 이 금액은 이미 납부한 매각대금의 범위에서 상계 한다.²⁵⁸⁾

⑨ 철거 등

재무부장관 또는 지방관재국장은 계약이 복구되지 아니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점유자에 대하여 철거 또는 명도를 명하여야 한다.²⁵⁹⁾ 철거 또는 명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거 또는 명도하여야 한다.²⁶⁰⁾

⑩ 손해금의 면제

귀속재산을 임의로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가 해당 재산을 매수 또는 임차하는 경우, 그 재산에 피해가 없는 한 「귀속재산처리법」 제36조의2²⁶¹⁾의 규정에 의한 손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²⁶²⁾

⑪ 결손처분

재무부장관 또는 지방관재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속재산처리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 기타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²⁶³⁾

257)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346호) 제10조제1항

258)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346호) 제10조제2항

259)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346호) 제11조제1항

260)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346호) 제11조제2항

261) 「귀속재산처리법」 제36조의2 귀속재산을 허가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재산을 점유 또는 사용한 기간중 취득한 이득 또는 임대료에 상당한 금액을 손해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전항의 손해금을 소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262)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346호) 제12조

263)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346호) 제13조

- i) 납부의무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납부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계약을 해제한 때
- ii) 납부의무자가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규정에 의거하여 철거 또는 명도된 때

② 귀속재산체납정리위원회

결손처분의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 또는 지방관재국 귀속체납정리위원회를 둔다.²⁶⁴⁾

3) 실효 및 그 밖의 사항

① 실효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346호, 1963. 5. 29. 제정 · 시행)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의 유효기간을 1964년 12월 말일까지로 규정하여, 이 법이 한시적이 효력을 갖는 법률임으로 명시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동 특별조치법은 1964년 12월 31일 이후 실효(종기의 도래에 의한 실효)되었다.

② 적용의 배제

「귀속재산처리법」 중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다.²⁶⁵⁾

귀속재산으로서 부정축재처리법에 의하여 처리된 재산에 대하여는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²⁶⁶⁾

③ 국유화조치

1964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²⁶⁷⁾ 1964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귀속재산으로서 1965년 1월 1일 이후

264)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346호) 제14조

265)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346호) 부칙 제3조제1항

266)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346호) 부칙 제3조제2항

267)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346호) 부칙 제5조 제1항 제1문

그 매매계약이 해제된 귀속재산도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²⁶⁸⁾

1964년 12월 31일까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1965년 1월 1일에 「국유재산법」에 의한 대부계약으로 전환된다.²⁶⁹⁾

④ 국유화조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경과조치는 법률 1674호(1964. 12. 31. 개정, 1964. 8. 1. 시행) 일부개정을 통하여 신설된 것으로, 귀속재산에 대한 국민의 납부의무를 이행하도록 권장하는 한편, 영세한 국민들의 생활본거지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의 계약에 의하여 공매처분된 것을 제외하고는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전의 대금체납자에 대하여 계약이 해제되었거나 해제된 자라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²⁷⁰⁾

(2) 「귀속재산의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제정 · 폐지 및 주요 내용

1) 제정이유

대한주택공사가 승계한 구조선주택영단이 1945년 8월 9일 이전에 서울특별시 성배구 안암동 소재 부동산 대지 119필 1만324평 8합을 당시의 동양척식주식회사의 방계회사인 조선도시경영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하여 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일반에게 분매한 바 있다.²⁷¹⁾ 그러나 동 지역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미완료로 인하여 조선도시경영주식회사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채 8·15 광복을 맞이하여 해당 부동산이 귀속재산으로 확정됨에 따라 1963. 10. 28. 현재까지 미해결 상태로 있었다.²⁷²⁾ 이에 각 분매자에게 소유권이전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면 시가가 아닌 특정가

268)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346호) 부칙 제5조 제1항 제2문

269)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346호) 부칙 제5조 제2항

270)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74호) 부칙 제6조 신설.

271) 「귀속재산의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426호, 1963. 10. 28. 제정 · 시행) 제정 이유 참고.

272) 앞과 같음.

격으로 이 재산을 대한주택공사에 매각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설사 시가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에 상당한 금액을 대한주택공사에 자본화조치를 하는 경우라도 자본의 금액이 정부출자인 대한주택공사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되어 공사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이었다.²⁷³⁾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본건 대지 중 이미 구조선주택영단이 일반에게 분매한 대지 7천341여평에 한해서 「귀속재산처리법」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분매한 가격으로 대한주택공사가 해당 재산을 매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각 분매자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귀속재산의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다.²⁷⁴⁾

2) 주요 내용

① 「귀속재산의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목적

이 법은 정부관리기업체가 1945년 8월 9일 이전에 취득한 귀속재산에 관하여 「귀속재산처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²⁷⁵⁾

② 매각대금의 특례

정부관리기업체가 1945년 8월 9일 이전에 취득한 귀속재산은 「귀속재산처리법」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그 정부관리기업체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공법인에게 매매 당시의 가격으로 이를 매각하도록 했다.²⁷⁶⁾

③ 소유권의 이전

정부는 매각대금의 완납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귀속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²⁷⁷⁾

273) 앞과 같음.

274) 「귀속재산의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426호, 1963. 10. 28. 제정 · 시행) 제정 이유 참고.

275) 「귀속재산의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426호, 1963. 10. 28. 제정 · 시행) 제1조

276) 「귀속재산의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426호, 1963. 10. 28. 제정 · 시행) 제2조

277) 「귀속재산의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426호, 1963. 10. 28. 제정 · 시행) 제3조

3) 폐지

「귀속재산의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은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346호, 1963. 5. 29. 공포) 부칙 제5조에 따라 1964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을 무상으로 국유화조치함으로써 관계 사무가 종료되어 2007. 3. 23. 현재의 법체계에 맞도록 폐지하였다.²⁷⁸⁾

제2절 귀속재산처리의 적용사례로서 관련 판례 검토

1. 주요 판례의 개요 및 쟁점

(1) 귀속재산의 국유화

<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다1319 판결>

i) 사건의 개요

1938. 8. 일본 육군성은 이 사건 임야를 포사격 연습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²⁷⁹⁾ 그 후 1945. 8.15. 해방으로 이 사건 임야는 1945. 12. 6. 자 군정 법령 제33호 조선 내 소재 일본인 재산권취득에 관한 건에 의하여 같은 해 9. 25. 자로 미군정청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²⁸⁰⁾ 미군정 관재령 제11호에 따라 군정장관으로부터, 모든 임야는 농림부에서 관리하라는 지시가 있자, 농림부에서는 각 시·도에 공문을 보내어 당시 세무서에 있던 임야 대장을 근거로 귀속임야대장을 작성하여 농림부 산림국으로 송부하라고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임야들에 대해서도 귀속임야대장이 작성되었다.²⁸¹⁾ 이후 농림부에서는 각 시·도로부터 귀속임야대장을 송부받아 보관하여

278) 「귀속재산의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8304호, 2007. 3. 23. 폐지 · 시행) 폐지이유 참고.

279) 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다1319 판결.

280) 앞과 동일.

281) 앞과 동일.

오던 중 6·25 사변으로 정부가 부산으로 피난할 때 이를 가지고 내려갔고 1952. 7. 26. 부산에서 열린 제49차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귀속임야의 국유화에 관한 대통령의 결재를 얻어 구체적인 지적, 지번을 확정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되었다.²⁸²⁾ 한편, 6·25 사변 전 농림부의 지시에 의하여 작성하여 각 시·도에 보관하고 있던 위 귀속임야대장 중 경기도 및 광주군분이 6·25 사변 중 소실되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는 각 시·도에 귀속임야대장을 정비하라는 지시를 하면서, 농림부에서 부산 피난시 가지고 내려갔던 대장을 경기도에 보내었고 이를 시·군별로 분철하여 해당 시·군에 보냈고, 이를 참고하여 각 시·군에서는 임야의 실태를 약 17개월에 걸쳐 실지조사하고 여러 번 검토를 거쳐 귀속임야국유화 대장을 정비·작성하여 그 대장 4부를 농림부에 송부하였다.²⁸³⁾

ii) 쟁점 및 판단: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른 국유화 절차의 적법성

귀속재산처리법령에 따르면 귀속재산의 국유화조치와 관련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에 필요한 부동산은 관계 각 부 장관이 제의하여 국무회의의 의결로써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다.²⁸⁴⁾ 이 때 이 사건에서는 국무회의의 의결 및 대통령의 결재를 받는 방법이 적법한가에 대한 사항이 다투어졌다.

판례는 귀속재산을 국유화함에 있어서는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결재가 필요하며 이 절차 없이 행하여진 국유화조치는 법률상 그 효력이 없다고 하였다.²⁸⁵⁾ 그런데 그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결재를 받는 방법에 있어서는 국유화계획에 관하여 위 절차를 밟고 개별적인 실시에 관하여 그 절차를 밟을 수도 있어, 어떠한 방법에 의하든 결국 그 절차를 밟으면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²⁸⁶⁾

282) 앞과 동일.

283) 앞과 동일.

284)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

285) 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다1319 판결.

286) 앞과 동일.

따라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귀속재산의 국유화조치는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받았다.

(2) 귀속재산처분과 신의칙 주장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다카2397 판결>

i) 사건의 개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1930. 3. 15.자로 일본인인 안부정태랑의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45. 8. 9.자로 소외 조선해륙운수주식회사²⁸⁷⁾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²⁸⁸⁾ 이후 1961. 6. 13.자로 피고 A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소외 망 갑(甲 피고11 내지 16의 피상속인), 피고 을(乙)을 거쳐 피고 1 내지 9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²⁸⁹⁾

한편 소외 ‘조선해륙운수주식회사’가 소외 ‘한국운수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된 후인 1959. 4. 15.(이는 1958. 8. 29.의 오기로 보여짐) 위 한국운수주식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처분승인을 받아 이를 1959. 4. 28. 피고 A에게 처분하였다.²⁹⁰⁾

이 사건 토지는 1986년 현재 해방 후 37년 8개월 이상 경과되었고, 교통부장관의 처분승인에 기하여 피고 A에게 처분하고 그 등기를 경료하여 준 후 21년 7개월 이상 경과된 상태였다.²⁹¹⁾

ii) 쟁점 및 판단

이 사건에서는 교통부장관의 승인까지 받아서 처분한 이 사건 부동산을 귀속재산이라 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국가의 행위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졌다.

287) 피고 대한통운주식회사와의 합병 및 상호변경 전의 회사로서 피고회사가 위 소외 회사의 지위를 포괄승계하였다(판례 내용임).

288)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다카2397 판결

289) 앞과 동일.

290) 앞과 동일.

291) 앞과 동일.

대법원은 소외 ‘조선해륙운수주식회사’(상호변경 후 ‘한국운수주식회사’)가 귀속사업체로서 정부의 통제를 받았던 관계로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처분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귀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처분승인은 귀속사업체인 위 소외회사에 대한 관리통제를 하는 지위에서 그 관리통제의 일환으로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²⁹²⁾ 또한 귀속재산의 관리청도 아닌 교통부장관의 처분승인이 있었다 하여 귀속재산의 성질이 변환되거나 그 처분이 유효로 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A에게 처분한 자는 위 소외회사이고 국가가 그 당사자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를 국가의 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보았다.²⁹³⁾

따라서 대한민국이 귀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가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민의 법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제소행위가 위와 같이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뒤에 있었다고 하여 이를 신의칙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²⁹⁴⁾

(3) 귀속재산의 매매계약 해제 사유

<헌법재판소 2000. 6. 1. 98헌가13 전원재판부 결정>

※ 귀속재산처리법 제21조의3 위헌제청 사건

i) 사건의 개요

갑(甲) 농림주식회사는 1942. 1. 8. 일본인 A의 소유이던 제1토지 와 제2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1943. 2. 2.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는데, 1945. 8. 15. 해방 이후에는 국가가 귀속재산으로 이를 관리하여 왔다.²⁹⁵⁾

292) 앞과 동일.

293) 앞과 동일.

294) 앞과 동일.

295) 헌법재판소 2000. 6. 1. 98헌가13 전원재판부 568-569면.

신청인 을(乙) 및 그의 처 병(丙)은 1954년 경부터 제1토지상의 적산가옥에서 거주하면서 제2토지상에 축사를 짓고 사용해 오다가, 1961. 6. 30. 을(乙)은 제1토지를 구화 80만환에, 병(丙)은 제2토지를 160만환에 각 불하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160만환과 32만환을 각각 지급하고 잔대금은 1962년부터 1964년까지 매년 6.15. 분납하기로 약정하여 1962년치 분납금까지 납부하였다.²⁹⁶⁾

「귀속재산처리법」

제21조의3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매매계약에 의하여 1964년 6월 30일내에 납부하여야 할 분납금을 1965년 3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해제된다.

갑(甲) 농림주식회사는 1963. 1. 25. 국가를 상대로 제1토지 및 제2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여 승소, 같은 해 5. 1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 을(乙) 및 그의 처 병(丙)은 나머지 분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²⁹⁷⁾ 그런데 국가는 1978년경 제1토지 및 제2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갑(甲) 농림주식회사와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및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토지에 대해서는 1993. 10. 22. 승소판결(대법원 92다33671)이 확정되고, 제2토지에 대해서도 원심판결이 같은 취지로 파기 환송한 바 있다.²⁹⁸⁾

신청인 을(乙) 및 그의 처 병(丙)은 서울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위의 매매계약으로 인한 제1토지 및 제2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97가합88312)을 제기하고, 그 소송계속 중 「귀속재산처리법」 제21조의3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 하여 위헌제청을 신청하였고, 제청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심판을 제청하였다.²⁹⁹⁾

296) 헌법재판소 2000. 6. 1. 98헌가13 전원재판부 569면.

297) 앞과 동일.

298) 앞과 동일.

299) 앞과 동일.

ii) 쟁점

해당 위헌심판사건에서는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분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까지도 「귀속재산처리법」 제21조의3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당연 해제되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졌다.

iii) 헌법재판소의 판단

판례에 따르면, “귀속재산에 대한 관재당국의 불하 또는 임대차 및 그 취소 등 행위는 공법인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서 행하는 행정처분이므로 민법 기타 사법 등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은 아니다.”³⁰⁰⁾ 그러나 “귀속재산 매도처분이나 그 취소처분은 행정처분이기는 하나 그 성질이 매매계약과 그 해제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귀속재산 매도처분취소에 관하여도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를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³⁰¹⁾고 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일반적으로 “귀속재산을 매수한자의 분납금 납부의무의 불이행은 주로 고의나 과실과 같은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통례”인데, 제1토지 및 제2토지의 매수자인 신청인들이 법에서 정한 기일까지 잔여 분납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은 “국가가 갑(甲)농림과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소유권이 제3자인 갑(甲)농림 앞으로 이전등기가 된 데 원인이 있으므로 분납금 납부의무 불이행의 귀책사유는 오로지 매도자인 국가 측에” 있다.³⁰²⁾고 보았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귀속재산을 매수한자는 대금납부의무를 지는 한편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가 있다. 매수자의 이러한 권리는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매수자가 이 법률조항(귀속재산처리법 제21조의3)에 따라 1964. 6. 30. 내에 납부하여야 할 분납금을 1965. 3. 31.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도록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제한에 해당”³⁰³⁾하며, “공법상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는 상대

300) 대법원 1955. 3. 12. 4287민상 386, 카4808, 재인용: 헌법재판소 2000. 6. 1. 98헌가13 결정 전원재판부 571면.

301) 대법원 1966. 1. 25. 65다2129, 판결요지집 만사·상사편 I-2, 900, 재인용: 앞과 동일.

302) 헌법재판소 2000. 6. 1. 98헌가13 결정 전원재판부 572면.

303) 헌법재판소 2000. 6. 1. 98헌가13 결정 전원재판부 571면.

방의 의무불이행 사실로서 족하고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귀속재산의 매수자가 부담하는 분납금 납부의무 자체와 같은 공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를 가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자의 정책형성영역에 속한다.”³⁰⁴⁾고 하였다. 하지만, “분납금의 납부의무 불이행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은 매수자인 제청신청인들의 납부의사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매도자인 국가 측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고, 매수자의 분납금 납부의무 불이행 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그러한 특수사정이 소멸된 후에 매수자가 분납금을 납부할 수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그 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법절차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하였다. 즉, “귀속재산의 매도자인 국가의 계약해제는 매수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 국가로서는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소멸된 다음 매수자에게 분납금의 납부를 고지하는 등 계약해제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상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춘 적정한 조치.”³⁰⁵⁾라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귀속재산처리법」 제21조의3에 대하여,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가 법에서 정한 기일 내에 분납금의 납부를 불이행한 경우, 그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되더라도 이는 귀속재산의 불하에 따른 법률관계의 조기 확정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제재수단이므로 매수자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분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까지도 그 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는 부분은, 헌법의 요청인 적법 절차를 위반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한다.”³⁰⁶⁾고 판단하였다.

이 위헌결정 이후, 2005. 1. 27. 법률 제7346호로 「귀속재산처리법」 제21조의3 단서 규정이 다음과 같이 신설된 바 있다.

304) 헌법재판소 2000. 6. 1. 98헌가13 결정 전원재판부 572면.

305) 헌법재판소 2000. 6. 1. 98헌가13 결정 전원재판부 572-573면.

306) 헌법재판소 2000. 6. 1. 98헌가13 결정 전원재판부 573면.

“다만, 정당한 사유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 개정으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로 분납금의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되지 않게 되었다.

(4) 귀속해제를 받지 않은 등기부상 일본인 소유재산의 귀속 주체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2812 판결>

i) 사건의 개요

피고 갑(甲)은, 그의 아버지 A가 1943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원래 소유자인 일본인 B로부터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6.25. 사변으로 인하여 그 등기부가 멸실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귀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³⁰⁷⁾

ii) 판 단

법원은 “1945. 8. 9. 현재 등기부상 일본인 소유 명의로 있는 재산은 미군정법령 제33호 제2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이 취득하였다가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귀속재산”이 된다고 하였다.

만약, 그 이전에 이미 “한국인이 일본인으로부터 매수 기타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정 기간 내에 그 취득원인 사실을 들어 미군정법령 제103호³⁰⁸⁾와 1948. 4. 17.자 1948. 7. 28.자 각 군정장관지령에 의한 재산소청위원회에서의 귀속해제의 재결 또는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 및 법률 제102호, 제230호에 의한 확인을 받거나 혹은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에 의한 귀속해제를 받지 아니하는 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그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하였다.³⁰⁹⁾

307)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2812 판결

308) 법령 제103호: 재산소청위원회의 설치(1946. 8. 31.)

309)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2812 판결

(5)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임야의 소유주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2812 판결>

i) 사건의 개요

갑(甲)은 국유(전귀속)임야대장의 권리추정력에 따라 그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임야는 1945. 8. 9. 현재 일본인 소유가 아닌 것으로 단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³¹⁰⁾

ii) 판 단

법원은 갑(甲)의 주장에 대하여, “6·25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잡아 전국의 귀속임야를 기재한 귀속임야대장이 만들어졌고 이를 근거로 1952. 7. 26.자 국유화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 결정이 이루어지자 그 대상 임야들을 귀속임야국유화대장, 귀속재산국유화조치대장,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 국유(전귀속:前歸屬)임야대장에 기재한 데 이어 재무부와 농림부의 협의로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의 정비작업이 이루어” 진 바 있다. 즉, “국유(전귀속)임야대장은 결국 6·25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잡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임야대장 중 소유자란 기재에 부여된 권리추정력은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도 그대로 이어지므로,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야는 1945. 8. 9. 현재 일본인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나, 그렇다고 하여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임야는 1945. 8. 9. 현재 일본인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³¹¹⁾라고 하였다.

즉, 법원은 결국 국유(전귀속) 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그 권리추정력으로 인하여 당연히 귀속재산으로 볼 수 있지만,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라도 귀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310)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2812 판결

311)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2812 판결

**(6) 해방 전부터 일본 육군성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대한민국 내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관계**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1다66475 판결>

i) 사건의 개요

A 등은 본인들의 선조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이 사정되었는데,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대한민국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이라 주장하며, 해당 소유권 보존등기의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다.³¹²⁾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 육군성은 1938. 8. 경 포사격 연습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그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친 기록이 있다.³¹³⁾ 이후 일본 육군성은 이 사건 토지를 육군 제20사단(일명 경성사단) 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8·15 해방으로 이 사건 토지들은 1945. 12. 6.자 군정법령 제33호 '조선 내 소재 일본인 재산권취득에 관한 건'에 의하여 같은 해 9. 25. 자로 미군정청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³¹⁴⁾ 이어 미군정 관재령 제11호로 군정장관으로부터 모든 임야는 농림부에서 관리하라는 지시가 있어 농림부에서 각 시·도에 공문을 보내어 당시 세무서에 있던 임야대장을 근거로 귀속임야대장을 작성하여 농림부 산림국으로 송부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위 토지 중 임야에 대하여 귀속임야대장이 작성되었고, 해당 임야들에 대하여는 1952. 7. 26. 부산에서 열린 제49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귀속임야의 국유화에 관한 대통령의 결재를 얻어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국유화조치가 취해진 바 있다.³¹⁵⁾

312)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1다66475 판결

313) 앞과 동일.

314) 앞과 동일.

315) 앞과 동일.

한편, 6·25 사변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등기부 및 지적공부가 소실되자 국방부는 위 토지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1952. 5. 20.부터 1952. 11. 30.까지 3개조로 나누어 조사요원을 구성하고, 관할 세무서 및 현지 관계관서에 비치된 문서와 현지 지적 협회로 하여금 작성하게 한 측량도면을 토대로 군용지 대장을 작성하였다.³¹⁶⁾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은 위 군용지대장에 군용지로 등재되었고, 대한민국은 1965. 3.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관구사령부 공병 부훈련장부지, 특전사령부 수류탄투척장, 육군종합행정학교부지 등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1997. 11. 1. 이후로 국방부 용산사업단 관리하에 주한미8군 체력단련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었다.³¹⁷⁾

ii) 판 단

결국 이 사례는 해방 전부터 일본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대한민국 내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다투어진 사건이다.

① 귀속재산 여부

법원은 “해방 전부터 일본정부의 기관인 육군성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대한민국 내의 부동산은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와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서 말하는 귀속재산..³¹⁸⁾이라고 판단하였다.

② 이 사건 부지의 소유권자

판례는, 이 사건 부지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따른 귀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에 따라, 1964. 12. 31.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면 국가가 1965. 1. 1. 이 사건 각 부동산

316) 앞과 동일.

317) 앞과 동일.

318) 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다1319, 판결; 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도2606, 판결

에 대한 소유권을 무상으로 취득한다고 보았다. 또한 1965. 1. 1. 이후 적어도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한민국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되었을 소지가 많다는 점에서 이 사건 부지의 소유권자는 대한민국이라고 판단하였다.³¹⁹⁾

(7) 귀속재산의 점유취득 및 자주점유 인정 여부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36778 판결>

i) 사건의 개요

갑(甲)법인은 “1948년경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인 일본인 소외인으로부터 귀속재산인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하면서 1965. 1. 1. 이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³²⁰⁾

ii) 판 단

갑(甲)법인의 점유취득 주장과 관련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년 12월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어 그 이후에는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하는 것이 가능”하다.³²¹⁾ 그러나 “이에 대한 점유가 그 때부터 당연히 자주점유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 경우에도 소유의사의 유무는 점유개시 당시의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리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³²²⁾

319)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1다66475 판결

320)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36778 판결

321) 앞과 동일.

322) 앞과 동일.

또한,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는 것이나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처분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어떠한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하게 된 때에는 그 점유의 개시에 있어 이미 자신이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하는 자이므로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³²³⁾

이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는 “1945. 8. 9. 당시 일본인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귀속재산이었고,” 갑(甲)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갑(甲)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가 사인에게는 처분 권한이 없는 귀속재산임을 알면서 권한 없는 자로부터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의 법리에 따라, 갑(甲)법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자주점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점유 개시 당시에 자주점유가 아닌 이상 이 사건 토지가 국유로 된 1965. 1. 1.부터 갑(甲) 법인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³²⁴⁾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36081 판결>

i) 사건의 개요

A는 1944년경 일본인 갑(甲)으로부터 이 시간 제1토지 및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한 후 그 위에 목조로 된 집을 짓던 중 1946. 3. 경 사망하였다.³²⁵⁾ 이후 A의 배우자 A1이 공사를 완성한 다음 아들 B와 함께 그 집에서 살다가 A1은 1955년경 시숙모인 C에게

323) 앞과 동일.

324) 앞과 동일.

325)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36081 판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였고, C는 이 때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다가 C의 사망으로 그 아들인 D가 위 점유를 승계하고 D의 사망으로 그 배우자인 원고 D1이 1999년경부터 위 점유를 승계하여 2015년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³²⁶⁾

ii) 판 단

원심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귀속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원고의 시어머니 C의 점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전환된 1965. 1. 1.부터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20년이 경과한 1985. 1. 1.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C가 이 사건 각 토지가 귀속재산이어서 처분이 금지되는 것임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C 또는 그 점유승계자인 D 또는 D1의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바 있다.

먼저, A가 일본인 갑(甲)으로부터 1944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에, 매매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도면은 물론, 매매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한 채 구두로 매수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며,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매매대상을 정확히 알기 어렵고, 건축물관리대상장 토지 위의 주택도 1968년경 D에 의하여 건축된 것으로 되어 있고, 1984. 7. 23. 위 주택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D가 1968년 경 토지 위에 주택을 건축하였다가 1972. 10. 31.에서야 위 토지를 A1으로부터 매수하고 1980. 10. 25. 이를 원인으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1984. 7. 23. 위 주택에 대해서도 자신 명의로 소유권 보존증기를 경료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³²⁷⁾ 그 후 D가 1993년경 토지 위의 주택을 헐고 이를 다시 개축하기도 한 사실을 D1도 인정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D가 토지 위에 두 차례에

326) 앞과 동일.

327) 앞과 동일.

걸쳐 주택을 건축 내지 개축하면서 인접 토지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침범하거나 위 토지 위에도 새로 건물을 건축하는 등 이를 점유하게 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며, 이 때 D가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았다.³²⁸⁾

(8) 불법분배된 귀속재산이 은닉재산인지 여부

<대법원 1972. 5. 31. 선고 72다681 판결>

i) 사건의 개요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귀속농지의 일부로서, 1951. 3. 9. 경부터 군에 징발되어 사실상 대지로 사용되다가, 그 중 1958. 12.경 구획정리로 분할된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잘못 분배되어 국가 이외의자의 소유로 등기되었다.³²⁹⁾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국유 은닉재산으로 신고하고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ii) 판 단

대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원래 귀속농지로서 정부가 귀속재산인 사실을 알고 이를 농지개혁법 소정절차에 따라서 경작자에게 농지분배를 한 것이라면, 이는 은닉된 국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³³⁰⁾

즉, 농지분배의 대상이 아닌 귀속재산을 분배한 것이라면 해당 농지분배는 당연무효이고, 그 토지의 소유권은 당연히 국유로 환원되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국가가 은닉된 국유재산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³³¹⁾

328) 앞과 동일.

329) 대법원 1972. 5. 31. 선고 72다681 판결.

330) 앞과 동일.

331) 앞과 동일.

결국, 동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은닉된 국유재산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보상금지금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³³²⁾

2. 정리 및 소결

(1) 정 리

귀속재산과 관련한 판례들의 쟁점 사항을 분석하여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그 권리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³³³⁾

둘째, 점유의 개시 당시에 점유 대상이 귀속재산인 경우, 1965. 1. 1. 이후 국유화가 된 경우라도 해당 점유가 당연히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즉, 법률에 의하여 귀속재산이 국유재산으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에 따른 특정시점부터 그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³³⁴⁾

‘귀속재산과 관련한 자주점유 및 타주점유’ 판단의 분기점이 된 것은 1997년 8월 21일에 있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95다28625)이다.³³⁵⁾ 동 판결에서 다수의견이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 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하였다. 즉,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점유의 개시” 당시에 소유의 의사가 없다면 해당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추정이 깨어진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고, “종래 이와 달리 점유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32) 앞과 동일.

333) 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41805 판결.

334)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다54924 판결. 이 판결은 국가가 1·4 후퇴 당시 피난민들을 귀속재산인 잡종지에 무상으로 정착하게 한 경우 그 피난민들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본 사례로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전의 판결에서의 견해를 변경하기 전에 이미 전합 판결의 다수의견과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던 사례에 해당한다.

335)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례”의 견해를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귀속재산처리와 관련해서도 해당 판결을 분기점으로 변화가 있게 된다.

즉, 해당 전원합의체 판결(95다28625)이 있기 전에는 법원이 “귀속재산법 소정의 귀속재산에 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여 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는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한 바 있다.³³⁶⁾

그러나 1997년 8월 21일 선고된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후에는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그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어 그 이후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렇다고 이에 대한 점유가 그 때부터 당연히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이 경우에도 소유의사의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변복된다.”³³⁷⁾고 하였다.

즉, 점유개시 당시에 귀속재산인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이 불가하며,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이 무상으로 국유화되는 1965. 1. 1. 이후에 새롭게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기존의 점유가 당연히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변경되는 것은 아님을 명백히 하였고,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³³⁸⁾

336) 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41805 판결.

337)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6215 판결.

338) 전주지법 2007. 6. 15. 선고, 2007나210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다2187 판결; 대법원 2015. 1.

셋째, 귀속재산은 당연히 국유로 환원되어야 하는 것이므로,³³⁹⁾ 귀속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국가가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후에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이 되지 않는다.³⁴⁰⁾ 귀속재산의 경우 법에 따른 귀속재산 관리청 외(대한민국 정부라 하더라도 관리청이 아닌 국토부 장관 등 다른 부처 장관에게도 처분권한은 주어지지 않는다)에는 처분 권한이 없으며, 처분 권한이 없는 자의 귀속재산 처분행위는 당연무효에 해당하고, 처분권한 없는 사인의 처분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넷째, 정부가 귀속재산임을 알고 있었던 국유(귀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연무효로서 그 소유권은 당연히 대한민국으로 환원되는 것이고, 당연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상이 된 토지는 은닉된 국유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토지를 자진반환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라도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이나 환수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³⁴¹⁾

(2) 소 결

위에서 소개한 판례들은 모두 해당 재산이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의 귀속재산으로서 국유재산임을 전제로 하면서 소유권의 주체를 따지거나 점유취득시효를 따지고 있다. 이는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실효된 1964. 12. 31.까지 처리되지 않은 귀속재산은 동법 부칙 제5조에 따라 모두 국유재산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판례에서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의 귀속재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귀속재산」을 따로 정의하지 않고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의 귀속재산으로 표현하였기 때문이다. 참고로 「귀속재산처리법」에서는 귀속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을 뿐 귀속재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았다.

15. 선고 2012다36081 판결 등.

339) 대법원 1972. 5. 31. 선고 72다681 판결.

340)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다카3297 판결.

341)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6061 판결; 1997. 12. 26. 선고 97다34129 판결 등.

제4장

귀속재산처리의 법제적 개선방안

제1절 「귀속재산처리법」 중 존치할 필요가 있는 규정

제2절 「귀속재산처리법」의 존치 여부에 관한 의견

제3절 귀속재산의 처리를 위한 법제적 개선방안

제4장

귀속재산처리의 법제적 개선방안

제1절 「귀속재산처리법」 중 존치할 필요가 있는 규정

귀속재산의 환수와 관련한 사건들은 2019년 현재에도 계속 진행 중이다. 하지만 염밀하게 귀속재산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들이 2019년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지, 현행 「귀속재산처리법」을 적용하여 실제로 관리하는 ‘귀속재산’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제3장에서 검토한 귀속재산처리법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귀속재산처리법(법률 제8852호)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목적, 귀속재산의 정의, 매각대상, 정부관리원칙
제2장 국유와 공유	귀속재산의 국유화조치
제3장 매각	귀속재산의 불하 관련 사항
제4장 관리	국가관리 귀속재산의 임대 및 관리
제5장 관재업무관장기관	관장기관
제6장 별칙	징역, 벌금
제7장 보칙	귀속주식매각의 특례

구체적으로 장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에서는 귀속재산처리법의 목적, 귀속재산의 정의, 매각대상, 귀속재산의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에게 매각되기 전까지의 정부관리원칙을 규정한다.

먼저, 「귀속재산처리법」의 목적은 ‘귀속재산을 유효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구)「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부칙 제3조에서는 「귀속재산처리법」 중 (구)「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도록 하였고,³⁴²⁾ 동법에서는 1964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³⁴³⁾ 및 1964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귀속재산으로서 1965년 1월 1일 이후 그 매매계약이 해제된 귀속재산을 무상으로 국유로 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³⁴⁴⁾ 따라서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른 귀속재산은 해당 규정에 따라 1965. 1. 1. 이후 국유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1964년 12월 31일까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 역시 1965년 1월 1일에 「국유재산법」에 의한 대부계약으로 전환되도록 규정³⁴⁵⁾하고 있으므로 해당 재산도 국유재산 관리체계에 편입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유효적절하게 관리할 ‘귀속재산’이 현재 존재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귀속재산’의 정의 규정의 필요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귀속재산의 관리체계가 국유재산 체계에 편입되었다고 볼 경우라도, ‘귀속재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현행 「국유재산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 따라서 1965. 1. 1. 이후 국유재산으로 관리되어야 할 귀속재산의 내용 및 범위가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있는 제2조의 정의 규정은 여전히 의미를 갖는다. 귀속재산처리법의 적용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귀속재산과 관련한 소송사건에서 실제로 인용되고 있는 「귀속재산처리법」의 내용 역시 대부분 귀속재산의 정의 규정인 제2조이다. 이 정의 규정이 갖는 의미는 뒤에서 다시 기술하기로 한다.

342)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346호) 부칙 제3조 제1항

343)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346호) 부칙 제5조 제1항 제1문

344)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346호) 부칙 제5조 제1항 제2문

345)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346호) 부칙 제5조 제2항

「귀속재산처리법」 제3조에 따른 매각 대상에 관한 사항은 현재로서는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귀속재산 중 국공유로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에게 매각하도록 하는 규정인데, 1965. 1. 1. 이후로는 무상 국유화조치를 선언했으므로 매각할 귀속재산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 제4조 역시 국공유 재산 관리주체가 관리하게 되므로 현재는 효력이 없는 규정이다.

제2장 국유와 공유 규정 역시, 현재 국유화조치를 할 귀속재산이 없고,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346호, 1963. 5. 29. 공포) 부칙 제5조에 따라 1964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을 무상으로 국유화조치함으로써 관계 사무가 종료되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는 내용이다.

제3조의 규정이 실효성이 없다면, 매각 절차 및 가격 매수자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제3장 매각 관련 사항 역시 크게 의미가 없어진다.

제4장 관리에 관한 규정 역시, 실질적으로 현행 국유재산 관리체계로 편입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5장 관재업무관장기관 규정 역시 사문화된 규정이다. 현행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르면 귀속재산에 관한 사무를 지방세무관서가 관장하도록 하고, 귀속재산소청심의회를 국세청에 두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³⁴⁶⁾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에서 관장하고 있고, 현재 귀속재산 환수와 관련한 실제 사무는 조달청 국유재산 기획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제6장 별칙 규정에서는 불법으로 귀속재산을 취득, 처분, 멸실, 훼손 또는 은닉한 자에 대한 제재, 귀속재산의 임차 · 관리 · 매각에 대한 허위보고 ·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처리되지 않은 귀속재산이 모두 국가 소유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국유재산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해당 별칙의 내용이나 별금액(화폐단

³⁴⁶⁾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대통령령 28946호)

위가 ‘환’으로 되어 있음) 등 자체도 오랫동안 정비되지 않아 현 실정과 전혀 맞지 않다.

제7장 보칙에 규정된 귀속주식매각의 특례 역시 현행에 적용대상이 없으므로 실효성이 없는 규정에 해당한다.

다만, 판례는 다음과 같이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의 ‘귀속재산의 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다.

먼저,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년 12월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어 그 이후에는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하는 것이 가능”하다.³⁴⁷⁾ 따라서 1965. 1. 1. 이후 국유화된 귀속재산에 대해서는 1965. 1. 1.부터는 점유취득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점유의 개시가 1965. 1. 1. 이전인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진다. 즉, 점유개시 당시에 해당 재산이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른 ‘귀속재산’인 경우에는 판례에 따라 ‘자주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³⁴⁸⁾ 즉, 점유개시 당시에 귀속재산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라면 점유취득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또한, 점유개시 당시에 귀속재산이었던 경우 선의의 제3자에 대한 신의칙 주장 역시 배척하면서³⁴⁹⁾,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른 귀속재산인 경우는 일반 사인에게 해당 귀속재산의 처분권한이 존재하지 않고, 처분권한 없는 자의 귀속재산처분행위는 동법에 따라(현재 실효성 여부는 별론으로 함)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즉, 처분 권한 없는 자의 귀속재산처분행위에 관하여 국가가 20여년이 지난 후 그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³⁵⁰⁾

347)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36778 판결

348)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다2187 판결.

349) 대법원 1986. 11. 26. 선고 85다카2397 판결.

350) 앞과 동일.

이는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귀속재산’을 따로 정의하지 않고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를 인용한 데에 따른 것인바, 그나마도 이 규정이 「귀속재산처리법」 중 지금도 존재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제2절 「귀속재산처리법」의 존치 여부에 관한 의견

1964. 12. 31.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실효됨에 따라 그 동안 처리되지 않은 귀속재산은 법적으로 모두 국유재산으로 바뀌었는바, 이로써 귀속재산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현실적으로 남은 문제는 귀속재산 중 실질적으로 ‘처리’가 필요한 다음의 재산이다.

- ① 대한민국 정부가 귀속재산임을 인지하지 못하여 방치되고 있는 재산
- ㉡ 탈법, 불법적인 방법으로 빠져나간 귀속재산

먼저, ①의 재산의 경우에는, 「귀속재산처리법」에서 정하는 “귀속재산”에 해당하고, 해당 점유의 개시가 1965. 1. 1. 이전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면, 이들 재산에 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나 점유의 개시가 1965. 1. 1. 이후 시점이라면, 동시에 ‘해당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귀속재산이었던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국가는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②에 해당하는 귀속재산의 경우는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에 따라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었지만, 국가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방치하고 있는 재산이므로 국유재산법령에 따른 ‘은닉재산’에 해당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는 “은닉된 국유재산”을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 공부에 국가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고,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국유재산”이라고 하고 있다.³⁵¹⁾

351)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따라서 ⑦에 해당하는 귀속재산의 처리는 은닉 국유재산을 찾아서 환수하는 과정과 동일하다. 자주점유 추정을 번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1965. 1. 1. 이전 점유개시된 ‘귀속재산’이라는 점을 밝혀야 하는데, 이는 점유 당시에 자주점유로 볼 만한 사정(귀속재산이었는지 여부)이 있었느냐의 관한 사항으로서 「귀속재산처리법」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인바, 앞으로 「귀속재산처리법」을 존치할 것인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문제라 할 것이다. 다만, 「귀속재산처리법」이 폐지되면 법원이나 일반 국민이 ‘귀속재산’의 정의를 이미 폐지된 법률에서 찾아야 하는 불편이 있게 된다.

판례는, ⑦에 해당하는 ‘탈법, 불법적인 방법으로 빠져나간 귀속재산’의 경우는 은닉 국유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법행위에 따라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연무효로서 그 소유권은 당연히 국가로 환원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³⁵²⁾ 따라서 ⑦에 해당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국가가 귀속재산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관계 공무원 등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일실된 것이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로부터 점유이전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질 당시 ‘귀속재산’이었음을 입증하면 그 소유권은 당연히 국가로 환원하게 된다. 이 역시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에 귀속재산이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귀속재산처리법」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인바, 앞으로 「귀속재산처리법」을 존치할 것인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문제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귀속재산과 관련하여 현재 남아 있는 과제는 과거의 귀속재산 중 ⑦ 대한민국 정부가 귀속재산임을 인지하지 못하여 방치되고 있는 재산과 ⑦ 탈법, 불법적인 방법으로 빠져나간 귀속재산을 처리하는 것인데, 이 사항은 기본적으로 「귀속재산처리법」의 존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법리적으로 「귀속재산처리법」을 존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성립되기 어렵다.

그러나 위의 문제가 「귀속재산처리법」의 존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는 하지만, 「귀속재산처리법」이 폐지되어 현행 법령상 귀속재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352)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34129 판결.

모두 사라지게 되면 법원과 일반 국민이 ‘귀속재산’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폐지법률을 뒤적여야 하는 불편이 있게 된다. 이와 같이 ‘귀속재산’과 관련한 문제가 잔존해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법령정비의 차원에서 굳이 「귀속재산처리법」을 폐지하는 것이 입법정책상 타당한지도 의문이다. 더욱이 동법을 존치하는 데에 별다른 노력이 드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귀속재산처리법의 폐지 여부가 현재 남아 있는 귀속재산 관련 법률관계의 처리에 법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귀속재산’과 관련한 법적 다툼이 대부분 해소될 때까지는 편의성 측면에서 당분간 「귀속재산처리법」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입법정책상으로는 더 낫다고 할 수 있겠다.

제3절 귀속재산의 처리를 위한 법제적 개선방안

귀속재산법의 존폐 여부는 현재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법적 문제(은닉재산과 불법적으로 빠져 나간 귀속재산의 환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리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이미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법률들에서 규정했던 귀속재산에 대한 법적 지위가 확정되어 있어서 역사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그러한 지위는 그 법들의 존폐 여부에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귀속재산 문제의 최종적 해결을 위한 ‘법리 설정’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귀속재산 문제의 해결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회적 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의 차원에서 실제적 작업에서의 편의를 도모하는 규정을 일부 도입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은닉재산이나 불법일탈재산의 환수에는 공적 장부를 통한 지루한 확인 작업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한 전담기구나 인력 보강을 위한 규정 또는 과거 호적공부상 기록의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접근 권한에 대한 규정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이를 위해서는 잔존 귀속재산의 국유재산으로의 환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³⁵³⁾ 이를 통해 해결이 필요한 문제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필요한 전담기구의 설치 또는 인력의 보강 그리고 개인정보 열람에 관한 권한 규정의 정비 등을 통해 남아 있는 귀속재산의 잔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해방 이후 남겨진 역사적 과제를 정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현행 「귀속재산처리법」은 당분간 그대로 존치해도 좋겠지만 이미 사실상 기능이 끝난 법이기 때문에 폐지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귀속재산과 관련한 법적 문제는 시대가 흐름에 따라 달라져 왔다. 해방 이후 초기에 귀속재산 처리는 민간불하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했지만, 그 시점이 지난 이후에는 포괄적인 국유화를 통해 국가재산으로서 관리되어야 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다. 현재에는 이처럼 국유재산으로서 관리되어야 함에도 종래 여러 경로로 온니 내지 불법적으로 일탈된 재산을 국유재산으로 환수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이를 위해 「귀속재산처리법」을 전면개정하여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는 방안도 잠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법명칭에 나타나 있는 ‘귀속재산 처리’의 실질은 ‘민간불하’라는 점에서 그러한 정책방향은 이미 시대적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귀속재산 관련 문제의 해결은 더 이상 과거의 ‘귀속재산 처리’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귀속재산처리법”이라는 법명칭을 내걸고서 그와 상관없는 내용의 조항들로 개정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귀속재산 민간불하를 조속히 종결하고 포괄적인 국유화를 추진하고자 했던 1960년대 중반의 과거 사례가 역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그 시대적 과제에 대응했던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법적 과제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응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53) 2019년 광복절을 맞아 KBS 뉴스에서 ‘아직도 남은 적산(敵產) 문제’를 보도한 바 있다. 취재 후의 정리 내용을 KBS 홈페이지에서 살펴 보면 귀속재산 환수의 법률 관계 정리 절차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신속히 정리하려면 특별한 권한을 가진 기구가 꼭 필요”하고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KBS 뉴스 홈페이지 참조 (검색어): [취재후] 눈을 의심했다…명동 한복판 건물 현 소유주는 “조선총독부” (www.news.kbs.co.kr/news/view.do?ncd=4264382))

제5장
결 론

제5장

결 론

1. 「귀속재산처리법」은 그 내용을 살펴 볼 때 법적 성격에서 한시법이다. 한시법은 규율대상에 대한 규율목적을 완료하면 폐지됨이 정당하다.
2. 그러나 역사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귀속재산처리의 정책은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 사이에도 차이가 있었고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법률이 다루어야 할 시대적 과제도 달라졌다. 이승만 정부 때에는 귀속재산의 대대적 민간 불하가 목적이었고, 박정희 정권 때에는 귀속재산 민간 불하의 신속한 법적 종결과 국유화 조치가 목적이었다. 전자의 목적을 위하여 「귀속재산처리법」이, 후자의 목적을 위하여 「귀속재산처리특별법」이 각각 제·개정되면서 기능하였다. 그리고 전자의 법은 시대적 역할을 다 했지만 현재 존치되어 있고, 후자의 법은 역할을 마치고 이미 폐지되었다.
3. 그럼에도 귀속재산에는 여전히 미처리, 미종료, 미완결된 부분이 존재한다. 본래 귀속재산에 속하지만 관리나 공적 장부의 불비·확인 불충분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은닉된 재산과 불법·탈법적으로 빠져나간 재산이 그러하다. 이 부분을 정리함으로써 귀속재산 처리를 완결해야 하는 것이 현재의 시대적 과제라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4. 이러한 귀속재산의 미완결된 법적 부분은 귀속재산의 본질적 성격 내지 법적 지위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와 관련되어 있다. 귀속재산은 본래가 국유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은닉 내지 탈루된 귀속재산은 이를 국유재산으로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필요한 법리는 이미 판례에 의하여 ‘악의의 무단점유’인 경우에는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지기 때문에 새롭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하지 않으면 자주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확립되었다.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본래 귀속재산에 속하는 것이라면 1965. 1. 1.부터 국유재산으로 확정된 시기 이후 새로운 점유 개시가 없는 한, 국가는 원인무효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5. 그러므로 「귀속재산처리법」의 존폐는 이러한 법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다만 환수작업을 위해 필요한 ‘귀속재산의 개념 정의’ 부분이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담겨 있기 때문에 현재의 법상태를 지속하는 것이 좀 더 편리할 뿐이고 그런 측면에서 당분간 현상유지의 방향이 정책적으로 다소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6. 다만, 그러한 법리 문제와는 별개로 귀속재산의 잔여 문제의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나 정책적 판단이 작용할 경우라면 이를 위해 필요한 전담기구나 조직의 설치 또는 인력 보강에 관한 규정, 과거 호적정보와 같은 개인정보에 관한 접근, 처리 권한 규정 등을 둘으로써 현재의 귀속재산 법률관계 문제 해결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특별법 제정의 방식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참고문헌

참고문헌

1. 문헌

강만길, 고쳐 쓴 한국현대사, 창비, 2012.

박경숙, “식민지 시기(1910년-1945년) 조선의 인구 동태와 구조”, *한국인구학*, 제32권 제2호, 2009, 29-58쪽.

박배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개인의 청구권”, *국제법평론*, 통권 제14호, 2000, 15-38쪽.

배석만, “해방 후 귀속재산처리의 전개과정과 귀결”, *한일민족문제연구*, 제26집, 한일 민족문제학회, 2014. 6, 43-91쪽.

윤황지, “미군정기의 귀속재산에 관한 일 고찰”, *부동산학보*, 제24권, 2005. 8, 255-273쪽.

이대근, 귀속재산 연구 - 식민지 유산과 한국경제의 진로 -, 이숲, 2016.

재무부 편, 재정금융의 회고 : 건국십주년 업적, 단기4291(1958).

2. 법령자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귀속재산처리법 시행세칙」

「귀속재산소청심의회 규칙」

(구)「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內務府治安局 발행, 美軍政法令集, 兵學社, 단기4289(1956).

미국의회도서관 사이트(www.loc.gov/law/help)

KBS 뉴스 홈페이지(www.news.kbs.co.kr)

현안분석 19-03
귀속재산처리법 존치 필요성 및 개선방안 연구

2019년 10월 1일 인쇄
2019년 10월 4일 발행

발행인 | 김계홍

발행처 |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전화 : (044)861-0300

등록번호 | 1981.8.11. 제2014-000009호

홈페이지 | <http://www.klri.re.kr>

값 7,000원

1. 본원의 승인없이 전재 또는 역재를 금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 978-89-6684-943-7 93360

양태건(책임)

학력

서울대 법학박사
(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실적 및 논문

매장문화재 보호 및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법제 연구(2018)
성범죄자 취업제한 법제 정비 및 개선 방안 연구(2017)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의 관리감독 개선을 위한 법제분석(2016)
지방옴부즈만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2015) 등

장은혜(책임)

학력

아주대 법학박사
(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실적 및 논문

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 – 영국 – (2018)
동물학대행위의 범위 및 처벌수위 분석 (2018)
Land Compensation Act in Korea (2017)
형만법령 제계 정비방안 연구(2017)
농촌 융복합시설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 분석(2016)
동물장묘업의 규제합리화를 위한 법제 분석(2015) 등



KLRI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ISBN 978-89-6684-943-7 93360